

머무르지 않고 노동자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요구를 제기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주택수당 신설, 주택자금 용자를 요구하며 대기업의 경우는 주택자금 용자와 더불어 사원임대주택 건설을 요구하고 있다.

- **주택수당의 신설 및 확대** 서울 구로공단의 중원전자, 남성전기, 서울엔진베어링, 천지산업, 인천·부천의 동양이화, 동양엘리베이터, 반월의 삼양금속, 대구의 남선물산 등의 노조에서는 1~2만 원 정도의 주택수당을 요구했다.
- **주택자금 대출제도** 서울의 상미(주), 울산의 현대자동차, 인천의 대우자동차 등의 노조에서는 조합원의 퇴직금 범위 내에서 전세금 300~500만 원을 무이자로 용자해 줄 것을 요구했고, 대한교육보험노조는 연리 4%로 1인당 1천만 원의 주택자금을 대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 **사원주택·사원임대주택 건설** 대기업에서는 택지제공 요구와 주택조합 건설이 두드러져, 울산 현대자동차는 노사 동수의 「주택건설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주)통일, 기아기공 등에서 주택조합이 설립됐다. 창원지역의 한국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40개 업체에서 주택조합이 결성됐다.

노동자의 주택 관련요구를 기업측에서 악용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삼성그룹의 경우 사원용주택 1만 5천 호를 건립하겠다는 조건으로 1990년 임금인상률을 예년보다 낮은 5.7%로 타결했다. 또한 성남의 동양정밀의 경우 평소 이 회사에 출입하던 보안사 소속 모상사가 조합원들에게 “성남노련을 탈퇴하고 시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시에서 분양하는 임대주택 입주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성남노련 탈퇴를 종용했다는 것이다.<sup>6)</sup>

이에 따른 1990년도의 주택자금 대출제도 실시현황은 <표 14>와 같다.

<표 14> 주택자금 대출제도 실시 현황

번호	조합이름	대출자격	대출금액	이자율	상환방법	대출제한
1	남성전기	독신무주택 라인장 미만		무이자	월 5만원	회사 2억원
2	민주일보	전사원				
3	서울주파					
4	에너지관리 공단	연간30명	1천만원	연 1%	5년 분할상환	퇴직금의 일부
5	전자신문	전직원	주택구입 500만원 임차300만원	연 8%	주택구입3년 임차2년 분할	사우회비와 회사지원
6	한국광학	1년 이상 근속자	퇴직금 중 통상임금 200%이내			
7	대준물산	전사원	퇴직금 한도내	은행이자의 절반	상여금 5~10회 분할상환	3천만 원
8	동양엘리베이 터	전사원	200만원	연 3%	36개월 분할	사내주택 용자 금 1억원
9	소예산업	무주택자 중 가장		연 6%		새마을금고 1억원
10	한국벨트	(전세금 인상만)	퇴직금한도내  기본급3개월분			
11	한국수출포장 수원	5년이상 근속기혼자	부장500만원 과장300만원 사원200만원	연 4%	급여지급시 1/48 상환	복지기금 2억원

6) 「전국노동자신문」, 1990년 4월 14일자.

12	동신유압	전사원	퇴직금 한도내	연 6%	1년거치 분할상환	1억2천만원
13	기아기공		300만원	연 5%	3년	사택입주 보증금
14	기아정기	600만원	월 0.3%	5년거치 일시상환		
15	통일	5년 이상 근속 기혼자	200만원	연 5%	1년거치 5년상환	
16	한국웨스트전 기	기혼자	200만원	월 0.5%	20개월 분할상환	
17	한국화약	3년 이상 근속	퇴직금 한도내 300만원	연 5%	1년거치 4년 상환 상여금 공제	회사은행 대출
18	화천기계					
19	현대자동차	기혼자 중 무주택자	500만원	연 6%	60개월 분할상환	
20	현대종합목재	사원	퇴직금 한도내	연 6%	20년 분할상환	주택지원금 5억원
21	현대중장비	전직원	퇴직금 범위내	연 6%	상여금지급시 50% 공제	
22	현대철탑	전직원	주택구입 600만원, 전세 300만원	연 6%	상여금 지급시 50% 공제	2억원
23	성화금속	전사원				
24	태일전자	전종업원	500만원이내	1.2%		
25	대우기전	전사원	300만원	연 6%	5년간 상여금 공제	은행지원금

26	강원산업	조합원	주택구입 1천만원, 전세 500만원	무이자	1년거치 5년분할	매년기금 10억원
27	신일공업	무주택자	퇴직금한도내	무이자	분할상환	
28	포항종합제철	무주택 전직원			500억원 지원	
29	대우전자 광주					
30	세화기계	전사원	500~ 3천만원	회사부담	본인의사에 따라	
31	아시아자동차	전조합원 (주택구입만)	500만~ 1천만원	월 0.3%	10년분할상환	주택자금 10억원
32	두산유리	근속 3년이상 기혼자	300만원	무이자	월급, 상여금 지급시 5년 분할상환	회사
33	성일통상	1년 이상 무주 택자 전세금 300만원 이하 자				
34	한국거울			월 1.5%		사우회대출금
35	한성공업	1년이상 근무자	퇴직금 한도내	연 10%	20개월 분할상환	9천만원

자료 : 전국노동조합협의회, 『단체협약모범안 해설』, 들베개, 1990. 9.

노동조합의 전국조직인 전국노동조합협의회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는 노동자의 주거안정요구를 제시하고 있는데, 한국노총에서는 노조와 기업주 사이의 주택협정 체결을 최우선과제로 놓고, 그 내용으로 주택복지위원회 설치, 주택자금 대출제도 실시, 주택수당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노동조합협의회에서는 “주거생활의 안정없이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삶은 결코 실현될 수 없다”는 대전제하에 1990년도 「주택강령」을 제출하였다.

###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우리의 요구

#### (1) 기업주에 대한 요구

- 최소한 주거비 상승분은 보전할 수 있도록 임금을 인상할 것
- 이익금의 5%를 사내복지기금으로 적립하거나 퇴직급여 총당금을 적립, 장기저리(또는 무이자)로 주택구입 및 전세보증금을 융자할 것
- 주택수당을 신설 또는 증액할 것
-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를 노동자주택 건설부지로 전환할 것
- 사원주택을 건설할 것

#### (2) 정부에 대한 요구

- 부동산투기의 주범인 30대 재벌을 비롯한 대토지소유자의 토지를 국가가 수용·매입·국유화할 것
- 수용령을 발동, 매입·국유화한 재벌 및 대지주의 비업무용 토지와 군사보호구역을 비롯한 국공유지를 노동자주택 건설부지로 제공할 것
- 현 7~12평형 공공영구임대주택 25만 호 건설계획을 대폭 확대하여 9~25평형 공공영구임대주택을 대량 건설할 것
- 별칙조항을 신설하고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전면 보호할 수 있도록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것

(자료 : 「1990. 임금인상투쟁지침서」, 전노협)

## 제4부

# 부 록

1. 1990년 정부와 사용자의 탄압일지
2. 각종 성명서와 참고자료
3. 『노동인권소식』 중 ‘역장’

부록 1

## 1990년 정부와 사용자의 탄압 일지

일 시	정부와 사용자단체의 지침	탄압 형태
1. 4		마산 한국수미다 폐업
1. 6	노동부 「90년도 임금교섭지도지침」 시달—임금교섭 선도 2백사 선정, 고율 임금인상을 자제 유도	울산 현대자동차 태업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적용
1. 9		명성전자 노조위원장 김기자씨(26 세)와 홍보부장 한선아씨(26세), 조선 통사 등 판금서적 소지 이유로 국가보 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1. 19		포항민노협의장 권오만씨(31세, 강원 산업노조위원장), 제3자개입 등의 혐의로 구속
1. 20	청와대 「산업평화 조기정착과 임금안 정을 위한 대책회의」, 전노협 창립을 원천봉쇄키로 노동부, '노동3권의 행사에 대한 올바 른 이해' 자료 배포	울산노동자협의회준비위 사무실에 권용목씨 연행을 목적으로 사복형사 20여 명 난입 부천 세종병원, 인천 기독병원, 기존단 체협약 대폭 개악조항 내걸어 경총지 침 표면화
1. 23	한국노사교육본부(회장 조철권, 전노 동부장관) 현판식, 노사정 공동출연	
1. 24	법무부, 전국 25개 지역 노사분규 전담반 편성, 초기 단계에서부터	원진레이온, '작업환경개선공청회' 열었다고 노동자 4명 해고

일시	정부와 사용자단체의 지침	탄압형태
2. 1	강력한 공권력 투입, 조기 진압키로 노동부, 전국 160개 노조에 대해 업무 조사권 발동	이전반대 농성중인 서울 대한광학노 동자 92명, 112신고로 전원 연행, 최홍 준씨(26세, 노조사무장) 등 3명 업무 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이관순씨(2 7세, 노조조직부장) 등 6명 불구속 입건
2. 2		(주)현대자동차, 연말상여금추가지급 요구와 관련, 업무방해혐의로 노조운 영위원 김희영씨(29세, 승용차 시트사 업무) 등 노조간부 12명 무더기 징계
2. 6	경단협과 정부, 7% 임금인상 억제안 확정	(주)도드웰 한국지사 노조원 9명, 기구축소 이유로 감원 해고
2. 7	이승윤 부총리, 청와대서 「91년 경제 안정을 위한 노사관계 및 건설인력 수급대책」 보고 —임금억제 위해 협약기한 연장 등	태평양화학노조 윤명선 지부장, 박노 해 글 발체, 조합원에게 나눠주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2. 9	노동부 「합리적 임금교섭 지침」—업 종별 임금공동교섭 확대방침	
2. 10	상공부, 노사분규로 인한 애로기업지 원 및 확인요령 공고—분규피해사 운영자금지원, 대기업 여신규제한도서 제외	
2. 13	상공부, 기계·차부품 등 파급효과가 큰 업종, 임금교섭 시기 통일 방침	
2. 15		구로 3공단 남지전자, 일방적 조업중 단, 회사출입 통제

일시	정부와 사용자단체의 지침	탄압형태
2. 16	상공부, 노사관계 대책반회의 —기업규모별 노무관리전담팀 운영키 로	
2. 18	노동부, 88개 노조에 조합운영자료 제출 요구 등 업무조사 착수	
2. 21	한국경영자총회(경총) '단체협약상의 위법 부당 조항의 무효화 조치사업' 결의 최영철 노동부장관—임금억제에 정부 적극 개입키로	(주)도드웰 한국지점 회사측 112신고 로 농성중인 조합원 19명 연행
2. 27	노동자 전국 42개 지방노동관서에 「90년도 노동조합 업무편람」 시달— 지역노조 구성범위 크게 축소, 쟁의기 금 징수도 조합비를 포함해 월임금 총액의 2% 내로 제한하는 등	마산 한국동경전자, 적자 이유로 87명 지명해고 전남 광주 금성알프스 업무조사 거부 로 노동부에서 고발, 출두요구서 발송
2. 28		포항 (주)동일철강 노조사무실 영장 없이 수색, 수배중이던 단의장 불심검 문에서 연행 구속됨
2. 29		포항제철 협력업체 (주)대진공업 34명 감원통보 등 포철협력업체 6백 명 감원계획
3. 2		구로 3공단 남성전기 임투 앞두고 위원장 해고 「동아건설 창동공장 노동동향보고 서」에서 동아건설사태는 계획적 탄압 으로 드러나
3. 3		마산 한국중천전화산업(주) 노조원 서양원씨(29세, 여) 폭력행위 등 처벌

일 시	정부와 사용자단체의 지침	탄압형태
3. 5		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중노위, 노조 전임자는 당연히 휴직상 태로 봐야 한다는 판정—한양대병원 차수련 위원장 등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에 대해 부천 풍림화학 사장, 부도 내고 임 금·퇴직금 떼먹고 도주 마산 동경전자 방문한 지역노동자, 관리자가 집단폭행
3. 7	정부, 두 자리 숫자의 임금인상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정책금융자금 지원 중단 방침	성남 한스교역 노조위원장 이재진씨 (32세, 노조전임자), 무단결근 이유로 해고
3. 8	노동부장관「근로자의 날」담화—불 법, 폭력적인 행위와 외부세력의 노사 문제 개입 단호 대처	창원 대림자동차(주)노조위원장 이승필씨(33세, 마창노련 조직국장) 구속
3. 10		‘북부노동자연맹’ 사건으로 왕해전씨 (27세, 외국어대 영문과 4년 제직) 등 4명,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3. 12		(주)삼성제약 노조위원장 김은임씨 (35세, 여), 업무조사 거부로 구속
3. 14		제임스리 노동운동 비방·왜곡 책자 「노사분규 25시」 배포
3. 23		서울대병원, 병원노련 파견전임자 인사조치 통보
3. 24	구로공단 업체대표, 상공부장관 간담 회 갖고 현행 노동법개정 건의	
3. 26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공부장관 간담회 갖고 휴일축소와 근로시간연장 촉구	

일 시	정부와 사용자단체의 지침	탄압형태
3. 27	치안본부 ‘민생치안 언론대책’, 전국시 도경찰국에 지시—언론과의 협조체제 강화 위해 언론사별 담당관제 운영 치안본부 ‘전국 진압부대 지휘관 회 의’—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에 공권력 투입 상공부, 경제단체연석회의, 노동관계 법 개정안 검토—법정근로시간연장· 월차휴가 폐지조항 등	
3. 29	상공부—경단협 공동대책회의, 국영기 업·30대 재벌 4월 중 조기타결 유도	
4. 2		울산지역 노동단체 압수수색
4. 4		안산 대봉전선 노동자 강민호씨(26 세), 야간작업중 연선기에 말려들어 사망 경찰, 구속교사석방 쟁취 및 전교조탄 압분쇄투쟁 결의대회 폭력봉쇄—무차 별 연행, 구타
4. 6		파업농성중인 인천 대한트랜스에 경찰투입, 노조위원장 김옥수씨(27 세) 등 2명 구속
4. 9	경제단체협의회「노사분규대책지침」 배포—노동쟁의 발생시 비상체제로 쟁의대책위원회 조직 등	
4. 12		금성알프스노조 지부장 김순임씨 (27세) 등 2명 업무조사 거부 혐의로 구속
4. 13		서노협 구로지구 부의장인 도일희

일 시	정부와 사용자단체의 지침	탄압형태
4. 14		(37세) 신한밸브 노조위원장, 집단폭행 당하고 폭력협의로 구속 동서문화사, 노조설립되자 경영악화 이유로 폐업했다가 상호변경운영 서울남부지역 기계금속노조, 3차례 112신고에 의해 조합간부 7명 구속
4. 18		광주 금성알프스노조 임시총회장에 구사대 난입, 집단구타
4. 22		인노협 사무실 수색
4. 23	노동부 「89년 주요 근로감독 실적」 발표.—근로감독 2,516 개소 실시, 사법처리업체 11개소, 구속자 0명, 85%가 노동법 위반으로 드러나	
4. 28		현대중공업에 공권력투입, '미포만 작전'이란 이름으로 파업농성을 무력진압
4. 30	10개 부처 국장급 참석 「산업평화특별대책반」 회의—산업평화 저해요인에 대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강력 대응키로	
5. 2		반월 오시오전자에 경찰투입돼 농성중이던 노동자 79명 전원 강제 연행
5. 3	검찰, 노사분규 수사반장회의—분규배후조정자 구속수사, 병원파업엔 공권력 조기투입 등	울산 현대자동차 김강희씨(30세, 트럭생산부) 등 2명 파업주도로 구속 (주)통일 이영일 노사통계차장 분신자살 서울 지하철공사, 노조 대표성 불인정 창원공단 내 (주)남성알미늄, 태성기공 직장폐쇄
5. 4		

일 시	정부와 사용자단체의 지침	탄압형태
5. 7	노태우대통령 시국담화 —KBS 방송민주화운동, 현대중공업 파업투쟁은 불법이며 단호하고 엄정한 법 집행...	
5. 8		서울시, 서울 남부지역 금속노조에 노조해산명령
5. 9		서울 화양동 영신교역 노조분회장 김순희씨(30세, 여) 구사대에 폭행당해 전치 6주 받음
5. 10		인천 대우정밀노조원, 협상시간에 회사측의 공권력 투입요청으로 150여명의 경찰이 도끼를 휘두르고 가스충을 발사하면서 연행
5. 11		성남 삼호물산 노조위원장 전동운씨(34세), 단협개약철회 요구하며 집단연월차휴가 사용하지 업무방해로 구속
5. 12		대구 태화염공에 경찰 3백여명 난입 인천 진성전자 직장폐쇄
5. 14		포항 삼풍공업 이상길씨 등 노동자 13명 광양공장으로 전출명령
5. 18		동서문화사, 폭행사건을 조작하여 노조간부 고소, 구속
5. 20		서노협, 구로공단 사장단 「법의 노동세력 공동대처방안」—내무문서 발견
5. 22		마창노련 의장 직무대행 정상철씨 구속

일 시	정부와 사용자단체의 지침	탄압형태
5. 24		진주 신흥고무 총무이사 이희태씨 (39세)가 노조 위원장 오상열씨(36세) 폭행
5. 28		인천 (주)보명 김재식씨 분신자살 휴업중인 인천 경성반도체 노조원 전원해고
5. 30		현재 노동자 294명 구속
5. 20		서울 (주)마이크로 코리아 노조간부 5명 해고
6. 1		부산노조총연합 및 부산노동자연합 사무실 수색, 부노련 김지숙의장 연행, 구속 대한교육보험, 경찰 투입으로 260명 연행
6. 3		인천 나우정밀 경찰난입, 위원장 황인철씨(27세) 등 4명 구속
6. 8		청주 AMK 출근투쟁중인 박필순 노조 위원장 직무대행 등 2명 구속 파업중인 부천 세라아트, 세진통신, 동룡상사 등 3개 사업장에 경찰난입, 부천노동자협의회, 부천노동법률상담소 수색
6. 11		서울 나우정밀 직장폐쇄 서울 광림전자 위원장 최승녀(27세) 등 3명, 작년 임투 때의 행동을 빌미로 구속 인천 선미사업 노조사무장 한상봉씨(28세) 등 3명, 인천시경 대공분실로

일 시	정부와 사용자단체의 지침	탄압형태
6. 13		연행돼 『노동자의 철학』 등 책소지로 국보법 구속 구로 3공단 나우정밀에 경찰난입, 조합원 6백 명해산 노조위원장 김점숙씨 등 3명 구속 부천 (주)우일, 노조 비방하는 관리자에게 항의하던 조합원 감금·무차별 구타
6. 18		인천 덕창기업, 임투소식지 발간건으로 노조간부 징계
6. 27	노동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마련—근로감독관의 사법경찰권 확대	
6. 30		전국건설일용노조 위원장 이규재씨(53세) 등 3명 화순군청 앞 항의농성 중 연행 구속
7. 5		인천 기독교병원, 단체협약 법정유효기간이 지났다고 단협 일방파기 거제 대우조선 민주노조 부위원장 이근태씨(36세) 회사측의 부당징계에 항의 음독자살
7. 7		포항 동일철강 직장폐쇄
7. 13		포항 강원산업, 부위원장 부인 조은숙씨(26세)에게 식칼 들이대며 납치·폭행 '사표강요'
7. 14		대구 주신기업노조 위원장 최태욱씨(23세) 분신 사망 해직교사 복직청원 서명운동 벌여온 최성수씨(31세, 서울 대신고) 해고



일 시	정부와 사용자단체의 지침	탄압형태
7. 19		구로 한창전기 직장폐쇄
7. 24	경단협, 「법정 기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액처리 지침」 회원사에 배포 정부, 공휴일 축소방안 차관회의에서 통과	
8. 4		마산 한국스타 직장폐쇄
8. 8		서울 동국무역 집단해고
8. 14	경기지노위, 부천 대성병원 노조측이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기각 '회사안에서의 노조 결성보고대회를 업무방해'로 판정	
8. 18		서울 지하철공사 단협 유효기간만료 이유로 조합비 일괄공제 거부
8. 24	상반기 산재 사망자 1,029명, 작년 대비 43% 증가(노동부 집계)	
8. 25		현대건설, 노조 새 집행부 출범 앞두고 간부 4명 전출
8. 30		성남 금강공업 부위원장 박성호씨 등, 경찰투입 속에 분신자살 대구 남선물산에 공권력 6차투입, 강제진압
9. 5	은행감독원, '임금 많이 인상하면 여신 규제 강화하겠다' 발표	
9. 6		인천 한독시계 출근투쟁중인 노동자 폭행 오순연씨(24세) 등 2명 머리 다치고 실신

일 시	정부와 사용자단체의 지침	탄압형태
9. 11		MBC, '사내기장 및 질서문란'을 이유로 안성일(35세) 노조위원장 해고 풍산금속 동래공장, 최루탄쏘며 경찰 난입, 조합원 89명 연행
9. 15	안기부, <보리밭 사잇길> <퇴색공간> 등 노동운동 비방만화 배포	인천 미미양행 대표 임금체불하고 일본으로 도망
9. 26		구로 아남정밀, 취업규칙과 사규위반 이유로 노조위원장 여혜경씨(26세) 등 간부 4명 해고
9. 28		경북 안동병원 노조위원장 설명조씨를 비롯 노조간부 4명, 병원식당에서 노조총회 열었다는 이유로 해고조치
10.14		마산 수미다 철수
10.15	청와대 '사회경제안정대책 합동보고회'에서 노동부, 분규현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노동계 주요인물의 철저한 동향파악 등 노동대책안 보고 쟁의발생 273개 업체 중 231개 업체에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10.16		금성사 구미지부 노조민주화추진위원회 대표인 정상탁씨(29세) 한밤중 테러 구미 금성마이크로닉스 한글날 쉬었다고 노조위원장 등 2명 해고
10.17	치안본부 전국 경찰에 '각종 불법쟁의 행위에 적극 개입해 사용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조기경찰력 투입' 지시	
10.18		경기남부노련 안산지구협의회 사무

일시	정부와 사용자단체의 지침	탄압형태
10.22		실, 안산노동자회 등 안산지역 노동단체 기습수색 노동부 지침, “쟁의 손실 노조에 청구하라”
10.23		현대건설, 신회철 총무부장 등 3명 해고
11. 5		한국경보 노동자 미군도끼자루에 맞아 실신(의정부)
11.13		마창노련 김영길 조사통계국장 구속
11.15	노동부 업무조사 확대. 전노협 소속 30여개 노조, 노총산하 35개 노조 업무조사 실시통보	(주)삼미금속 진주공장 작업물량 감소 이유로 일부 부서 가동중단 발표.
11.16	최영철 노동부장관 노동관계법 개정 발언	대동중공업 이석행씨(32세) 업무방해로 해고

## 부록 2

## 창립선언문

우리는 오늘 전국노동조합협의회의 깃발을 높이 들어 이 땅에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운동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엄숙히 선언한다. 우리 노동자가 이제까지 얼마나 긴 세월을 비인간적인 생활조건과 정치적 무권리 속에서 노예적인 삶을 강요당해 왔던가. 그러나 보라! 억압과 굴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역사의 전면에서 우뚝 일어서서 힘차게 진군하기 시작한 노동자의 전국적 대오를!

우리 노동자는 생산의 직접적 담당자로서 이 사회를 유지시키고 역사를 발전시켜온 주체이다. 이 땅의 노동자들은 노동자와 전민중의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기 위해 오랫동안 줄기차게 노동운동을 전개해 왔다. 저 멀리 선배 노동자들의 피땀어린 투쟁과 70년대 이후 민주노동운동의 발전, 그리고 장엄한 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성과를 계승하여 우리는 오늘 민주노조의 전국연대 조직, 전노협의 깃발을 힘차게 일으켜 세웠다.

노동자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영구화하기 위해 노동자의 조직적 진출과 투쟁을 가로막았던 자본가와 국가권력의 온갖 탄압과 회유를 분쇄하고, 우리는 공장에서, 사무실에서, 광산에서, 거리에서 불굴의 투쟁을 전개해 왔다. 단위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투쟁 속에서 지노협과 업종협을 결성하였으며 마침내 지역과 업종을 뛰어넘어 전노협으로 결집한 것이다.

우리는 이제 한국노총으로 대표되는 노사협주의와 어용적, 비민주적인 노동조합운동을 극복하고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운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한국노동조합운동의 새로운 조직적 주체가 탄생하였음을 만천하에 밝히며, 이 땅의 노동자가 진정으로 자신의 경제, 사회, 정치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자본과 권력의 탄압에 통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국 조직을 갖게 되었음

을 선언한다.

전국노동자의 단결의 구심인 전노협으로 결집한 우리는 비인간적인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동기본권을 쟁취함으로써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확보하기 위해 가열찬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는 광범한 노동자가 참여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실현을 위한 투쟁으로 대중적인 노동조합운동을 전개하여 우리의 조직과 의식을 발전시키는 기초 위에서, 노동자의 처지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경제사회구조의 개혁과 조국의 민주화, 자주화, 평화적인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제민주세력과 굳게 연대하여 투쟁해 나갈 것이다.

이와 같은 기본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민주노동운동의 조직역량을 확대강화하는 한편 업종별, 산업별 공동투쟁과 통일투쟁을 발전시키는 속에서 기업별노조체제를 타파하고 자주적인 산별노조의 전국중앙조직을 건설하기 위해 총매진할 것이다.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자본과 권력의 탄압과 온갖 장애를 물리치고 우리는 기필코 승리할 것을 확신한다. 우리의 투쟁은 정의로운 것이며 전민중과 민주세력이 우리와 함께 하고 우리의 나아갈 길이 역사의 진행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억압과 굴종의 세월, 어용과 비민주의 시대를 청산하고 전노협의 깃발 아래 강철같이 단결하여 자유와 평등의 사회를 향해 힘차게 진군하자!

**전국노동조합협의회 만세!**

**노동운동 만세!**

1990. 1. 22.

**전국노동조합협의회**

## 산업평화 특별대책반 1990. 1. 19 회의

사업장	관련부처	내 용
가업노조 업무조사권 발동 —노동부 관련노조 —시·도 관련노조	노동부 시·도	① 대상 —노동조합의 회계·경리상황에 문제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에 대한 조합원의 불만이 있는 경우 —전노협 결성자금 모금 등이 있는 경우
		② 조사기간 —1990. 2. 1~2. 28
		③ 주요 착안사항 —노동조합비 집행상황의 적정성 여부 —노조 결의사항의 관련규정 준수여부 —적법 상급 연합단체에의 가입여부 —노조운영과 의사결정과정에서 조합원 참여여부 —규약, 단체협약 등의 적정성 여부
		④ 조사결과 조치 —노동관련법령 위반 : 규약·처분의 시정·변경명령(법 제16조 및 제21조) —조사 및 시정 불응시 : 가법조치(법 제47조 및 제49조) 3월 이하 징역 또는 벌금 20만 원

제 3자개입 위법조치 —행적 및 사례조사 (범증확보) —위법조치	노 동 부	① 관련기관 협조하에 전노동감독관을 동원, 위법사례 등 범증확보 ② 처리방향 —범증확보 즉시 입건수사 —행위자에 대하여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검찰의 지휘를 받아 처리
노동조합 업무지도	노 동 부	* 규약 소속 연합단체는 범상 노동조합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탈퇴하고 법외 임의단체에 가입한 경우 —노동조합법 제13조 제3항에 의한 노동조합 변경신고시 반려조치
대응논리 홍보 및 교육 —이념교육 —대국민 홍보강화 —책자발행 및 모범사례 홍보	노 동 부 (한국노사 교육본부) 공 보 처	① 한국노사교육본부가 주관하는 각종 노사 교육시 이념교육 실시 ② 관련부처의 협조를 얻어 대국민홍보강화 ③ 대응논리를 평이한 해설과 함께 소책자로 대량 제작, 배포 ④ 최근 3년간 악성노사분규를 수습한 모범 사례를 발굴 홍보
노사관계 안정·설득 팀 운영	노 동 부	① 중앙 및 지역별로 학계, 언론, 종교 등 각계의 지도급인사를 망라한 팀을 구성 —경제난국과 노사관계 안정의 중요성과 노사협조를 호소하기 위하여 —강연, 노동자들과의 토론, 개별 면담 등을 실시 ② 기간 —1990년 2월중 ③ 설득팀 구성 학계, 언론, 체육, 종교, 문화, 예술, 여성 등 각계의 원로급 인사

준법질서 확립 —불법행위자 엄벌 —불법행위 원천봉쇄 —좌경유인물 단속	법 무 부 내 무 부 (치안본부) 노 동 부	① 사법처리 강화 —산업사회에서 노동관계법 위반은 물론 각종 불법활동을 자행하는 경우 가법처리를 강화해서 산업사회로부터 격리하고 법을 위반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 는 원칙을 확립함 —각종 불법행사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원천봉쇄
기업의 자구책 강화	상 공 부	① 기업주단체 및 경제단체협의회(대표 이동찬 경총회장) 등을 통한 기업의 자구책 강화 —노동자의 불만요인 사전 해소 —사내 교육을 통하여 급진이념 및 과격 투쟁 노선에 대한 실상 소개

## 1990 노동부 임금교섭지도 지침

### 기본방향

- 합리적 교섭분위기 조성
- 선도부문에 대해 강력지도, 여타 민간부문에 파급효과 확산

### 1. 합리적 교섭분위기 조성

- 사용자측의 적극적인 교섭자세 확립
  - 사업주가 직접교섭에 임하도록 지도
  -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거부·해태시 부당노동행위로 엄단
- 합리적 교섭관행 정착
  - 쟁의 목적과 수단의 합법성·정당성 확보
  - 단체협약 유효기간내 쟁의행위 자제 등 평화의무 이행 지도
  -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주장 자제 지도

### 2. 선도부문(Pattern Setter) 대상사업장에 대한 지도

#### (1) 임금교섭 상황표 작성을 통한 집중관리

- 대상—정부출연기관(37개소), 정부투자기관(24개소)
  - 30대그룹 주력기업(각 지방노동관서는 관내 타사업장의 임금교섭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을 선정, 제출)
  - 지역별 임금교섭 선도기업

※ 지방노동관서로부터 제출된 대상사업장 중 약 200개소를 선정하여 지방노동관서에 확정 통보(확정된 사업장은 감독관 1인당 1개소 책임제로 관리)

#### (2) 지도내용

- 국민경제여건, 물가상승, 노동생산성증가, 지불능력 등을 고려하여 임금인상이 적정수준에서 이루어지도록 조성
- ※ 선도부문에 대한 유관기관의 적정임금 결정지도

—정부투자, 출연기관 : 예산범위, 물가상승률(경제기획원)

—30대그룹 기업 : 생산성을 고려한 임금인상(상공부)

—임금수준이 높은 금융업종 : 물가상승률(재무부)

### 3.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임금교섭지도

#### (1) 임금교섭지도 대상사업장 관리 및 보고

- 관내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명단작성
  - 매주 금요일마다 임금교섭지도 대상사업장의 타결 실적을 집계하여 즉시 보고
  - 소정양식에 따라 사업장별 임금인상률 및 타결일자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보고(기본급 통상임금, 임금총액기준구분, 학력별 초임지급 현황, 파업기간중 임금지급 관련자료 등 필히 명기)
  - 휴·폐업 업체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기타 참고사항에 기재하여 보고

#### (2) 지도내용

- 선도부문의 조정추세 등을 참고하여 조기에 안정적으로 타결되도록 지도
- 임금안정에 따른 실질 소득보장을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책을 적극 설명
- 임금교섭지도시 임금격차 완화 및 임금체계 합리화 적극 지도

### 4. 업종별 공동교섭 추진

#### (1)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업종을 대상으로 임금공동교섭을 계속 추진

- 대상업종—기추진업종 : 면방, 신발, 민영탄광, 은행, 택시 등

#### (2) 1990년 임금공동교섭 기본계획 수립(1990. 2)

—노동부 : 상공부, 한국노총, 산별노련, 업종별 단체 협조

- 추진대상 업종별로 교섭대표 선정

—업종별 임금공동대표 선정(1990. 2)

—업종별 공동교섭 세부추진 일정 확정(1990. 2)

—기초자료에 대한 준비 및 합의(1990. 2)

—공동교섭 추진(1990. 3)

## KBS는 국민의 방송이어야 합니다

KBS 7천여 사원은 한마음이 되어 서기원씨의 사장직 사퇴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방송이 제대로 나가지 못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는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평생 좋은 방송을 만들어 국민여러분께 보답해야 된다는 자세로 일관한 저희들이 방송제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심정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입니다.

### 1. 쿠데타를 제외하고 방송국이 공권력에 장악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론은 권력이나 금력 기타 어떠한 간섭도 없이 자율성에 기초하여야 언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원씨가 KBS에 와서 처음으로 한 일은 4월 12일 12시 30분 백골단을 불러 117명의 방송인을 잡아가게 한 것입니다. 이는 경찰이 시청자의 안방을 짓밟은 것과 같습니다. 이는 한국 언론사는 물론 세계 언론사에도 그 유례가 없는 언론탄압의 폭거입니다.

### 2. 서기원씨는 KBS 사장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3·4·5·6공화국을 거치며 독재정권하에서 정권을 수호하는 각종 요직과 청와대 대변인, 서울신문 사장을 지낸 경력은 불문에 불인다 하더라도 신성한 국민의 방송국을 경찰의 무자비한 발길로 더럽힌 것 하나라도 서기원씨에게 '민주방송 KBS'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 3. KBS사태는 노사분규가 아닙니다.

작금의 KBS사태는 일반적 노동관행과 같은 노사분규가 아닙니다. 현재 KBS 7천 사원의 사장퇴진운동은 이 나라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인 것입니다. 그것은 부장단 및 실국장단이 전체 사원과 뜻을 같이 한다는 성명서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보처에서는 단순한 노사간의 문제로 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사장퇴진운동은 노동조합을 지키기 위한

것이러던가 노동운동을 하기 위한 차원이 절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4. 사장 취임반대는 통치권에 대한 도전이 아닙니다.

최병렬 공보처장관은 KBS사태가 통치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기원씨는 자신이 물러나면 국가의 기틀이 무너진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KBS사장의 임면 절차는 대통령의 행정적 요식행위일 뿐 실질적 KBS사장 임면권한은 KBS이사회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까지 KBS이사회에 사장 임면 제청을 예외없이 승인해 온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기원씨 취임반대가 어찌 통치권에 대한 도전이고, 국가의 기틀을 무너뜨리는 행위란 말입니까.

### 5. KBS는 다시 5공시절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5공 시절의 KBS는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여 편파, 왜곡방송을 강요당했습니다. 그 뒤 저희들은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수없이 참회하고 반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방송민주화가 확고히 뿌리내리는 시점에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여러분, 서기원씨가 사장이 되면 KBS는 5공시절로 되돌아갑니다.

최규하 대통령 밑에서 대변인을 지냈던 서기원씨는 후안무치하게도 또 변신 전두환정권하에서 해바라기로 지내온 권력 충성형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 6. KBS는 국민여러분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KBS가 어느 개인이나 정부의 소유물이 아닌 것처럼 KBS 사원들의 소유물이 아님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KBS는 국민 모두의 신성한 눈이며 입인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 KBS는 지금 공권력을 앞세운 관제사장에 의해 방송민주화가 짓밟히는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KBS를 지켜주십시오.

서기원씨는 사원을 경찰에 넘기고 실, 국장만이 참석한 취임석상에서 한 첫마디가 "방송이 끊기더라도 사장직을 지키겠다"고 엄청난 말을 하였습니다. 저희 사원들은 국익차원에서 국제방송과 사회교육방송은 제작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파는 막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반하여 공영방송 사장이란 사람이 사장직을 지키기 위하여 "방송을 끊겠다"고 어찌 말할

수 있습니까? 국민여러분! 저희들은 서기원씨가 사퇴하는 그 즉시 제작에 복귀하여 더욱 알차고 좋은 방송을 만들어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1990. 4. 17

KBS 전 사원 올림

## 성명서

### 안기부의 '사노맹'사건 발표에 대한 「사노맹관련구속자가족대책위」의 입장

지난 10월 30일 안기부는 불법연행, 감금, 밀실수사로 은폐되어 온 '사노맹'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안기부는 54명을 연행조사하여 이들 중 남진현 등 핵심조직원 40명을 반국가단체 구성 및 가입, 금품수수, 이적표 현물 제작·소지 및 배포 혐의로 구속했으며 150여 명을 수배조치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노맹 관련 구속자가족들은 이번 안기부의 '사노맹'사건 발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 1. 안기부가 핵심조직원으로 구속한 40명 중 대부분은 조직원이 아닙니다.

안기부는 구속된 40명을 현직 국교 교사인 정미화씨(22세·여, 대구 대덕국교 교사)는 전교조에 가입한 사실조차 없는데도 '전교조 침투책', 김동균씨(28세·남, 울지로 입구 분회장)는 지하철공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지하철 노조침투책' 등으로 근무지나 지역연고에 따라 '책임자'인 양 제멋대로 이름붙여 발표했습니다.

이밖에도 전금숙씨(24세·여, 성균관대 가정관리학과 졸)는 구속된 이명애씨를 안다는 사실만으로, 정은희, 권종길, 이동기씨는 사노맹 유인물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한두석씨는 유인물을 몇 번 배포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루아침에 사노맹 조직원으로 둔갑했습니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의 지하조직이며 명백한 반국가단체”라는 어마어마한 규정에 비해 구속자 각인의 혐의사실에 대해서는 실제적 증거도 제시된 바 없이 고문수사로 받아낸 본인들의 강제진술이 무슨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자 전원을 '핵심조직원'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오직

‘사노맹’사건으로 현정권의 위기를 넘겨보려는 여론재판용 졸작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 2. ‘사노맹’ 가입사실을 인정하라며 안기부는 고문수사를 서슴지 않았습 다.

안기부에 끌려간 구속자들 대부분이 “사노맹 가입 사실을 몰라”며 심한 고문을 당했음이 변호사접견과 가족면회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성수씨(27세·남, 성균관대 산업심리 4 중퇴)의 경우 연행 직후 2, 3일 동안 주먹과 구둣발 등으로 온몸을 구타당해 구치소로 옮겨진 뒤에도 심한 탈수 현상에 시달리고 있으며, 한정덕씨(27세·남, 성균관대 화학 3 휴학)의 경우에는 연행된 뒤 3일 동안 전혀 잠을 재우지 않은 상태에서 2, 3차례에 걸쳐 옷을 모두 벗기우고 몽둥이로 허리와 다리 등 온 몸을 혹독하게 구타하고, 플라스틱 자로 성기를 때리는 성적 모욕도 서슴지 않았습다(「한겨레신문」 11월 6일자 보도).

또한 남진현(28세, 서울대 무기재료 3 재적), 장오영(21세·남, 안양성결신학 줄), 전인현(23세·남, 숭실대 4), 김옥현(28세·남, 민중당 대구북부지구당 대외 협력간사), 정미화씨 등도 허리와 다리를 때리는 고문을 당해 걷기도 힘든 상태입니다.

5공의 망령이라던 고문수사는 6공에도 시퍼렇게 살아있음이 확인되었던 것입니다.

## 3. 안기부는 ‘사노맹’ 관련 구속자들을 도덕적으로 파렴치한 자들로 몰아세 우는 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안기부는 구속자들의 대부분이 3개월~1년 만에 부모와 상면하는 등 부모와의 정을 풀기 위해 유리된 생활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구속자들의 대부분이 집에서, 직장에서 강제로 불법연행되었음을 은폐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절도, 위장결혼으로 자금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세상에 이렇듯 억울한 누명을 겹도 없이 씌우다니 오직 우리 사노맹 관련 구속자가족들은 분개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보장되어 있는 ‘묵비’를 한다는 이유로 하루종일 개패듯 두들겨패 제대로 걷기도 힘든 상태로 만들어놓은 안기부의 반인간적 시대착오적 작태는 반성도 하지 않은 채

‘극렬심문투쟁’ 운운하며 정당한 자기방어를 여론재판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던 말입니까?

이러한 안기부의 작태는 이미 임수경양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전기대학에 떨어진 열등감 많은 사람’으로 몰아세우기에 급급했던 때와 다를 바 없습니다.

## 4. ‘통일’ 열기가 높아가는 이때에 ‘국가보안법’이 웬말입니까?

엄연히 반국가단체로 규정되어 있는 북한에 국무총리가 다녀오고 통일 추구대회다 예술인교류다 해서 통일이 벌써 다가온 듯한 지금, 단지 신념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차가운 시멘트바닥에 내던져져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사상의 자유’를 단죄하는 ‘국가보안법’은 이미 낡아 없어져야 할 법입니다. 어찌 이 법으로 구만리 같은 우리 자식들의 앞날을 가로막을 수 있던 말입니까?

‘통일’ 열기가 높아가는 이때에 ‘국가보안법’으로 40명을 구속시키고도 눈 하나 꿈쩍 안하는 현정권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보안사 대민사찰 폭로, 내각제 합의각서 유출 등 높아만 가는 국민들의 현정권에 대한 불신을 무마시키고 장기집권을 꿈꾸려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노맹 관련 구속자가족들은 안기부가 구속한 40명의 구속자들을 더이상 잡아들 아무런 명분과 증거가 없음을 분명히 하며 다음의 사항을 요구합니다.

### ■ 우리의 요구

- ‘사노맹’ 관련구속자를 즉각 전원 석방하라!
- 정치사상의 자유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
- 대민사찰의 주역·고문수사, 안기부·보안사를 즉각 해체하라!

1990. 11. 6.

사노맹관련 구속자가족대책위



# 노조간부 고소고발 및 불구속 명단

(1990. 6. 3 현재)

노조명	노 조 직 책	이 름	나이	법 조 항	사건일시	법적처리
나우 정밀	교 육 부 장	신경숙	25	업무방해	5/3	고소고발
	여 성 부 장	장위숙		제3자 개입	5/3	고소고발
	조 통 부 장	이복주	24	공무집행방해	5/16	불구속입건
	조 직 부 장	조미경		업무방해, 퇴거불응	6/15	불구속입건
	회 계 감 사	김금자		업무방해, 퇴거불응	6/15	불구속입건
	문 화 부 장	강영심		업무방해, 퇴거불응	6/15	불구속입건
	쟁 의 부 장	홍영선		업무방해, 퇴거불응	6/15	불구속입건
	대 의 원	정철영		업무방해, 퇴거불응	6/15	불구속입건
	복 지 부 장	배명자		업무방해, 퇴거불응	6/15	불구속입건
	조 합 원	오순자		업무방해, 퇴거불응	6/15	불구속입건
	조 합 원	황진옥		업무방해, 퇴거불응	6/15	불구속입건
	KDK	부 위 원 장	이재우	29	업무방해, 쟁의조정법	5/4
사 무 장		박경남	27	업무방해, 쟁의조정법	5/4	고소고발
선 전 부 장		김은숙	23	업무방해, 쟁의조정법	5/4	고소고발
교 육 부 장		고진국	25	업무방해, 쟁의조정법	5/4	고소고발
조 사 통 계 부 장		장근식	27	업무방해, 쟁의조정법	5/4	고소고발
문 화 부 장		도유현	27	업무방해, 쟁의조정법	5/4	고소고발
조 직 부 장		전정울	27	업무방해, 쟁의조정법	5/4	고소고발
쟁 의 부 장		박일남	27	업무방해, 쟁의조정법	5/4	고소고발
동국 실업		위 원 장	문양임		업무방해	5/3
	사 무 장	김정은		업무방해	5/3	고소고발
	조 직 부 장	김형예		업무방해	5/3	고소고발

노조명	노 조 직 책	이 름	나이	법 조 항	사건일시	법적처리
오리	위 원 장	안향자		업무방해		고소고발
	부 위 원 장			업무방해		고소고발
영창	위 원 장	신승배		업무방해	5/3	고소고발
실업	부 위 원 장	윤성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5/4	불구속입건
	총 무 부 장	김은주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불구속입건
	교 육 부 장	강이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5/4	불구속입건
	여 성 부 장	정인자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5/4	불구속입건
	체 육 부 장	김동필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5/4	불구속입건
	조 직 부 장	장재복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5/4	불구속입건
	조 합 원	이두희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5/4	불구속입건
	조 합 원	이윤자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5/4	불구속입건
조 합 원	하송자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5/4	불구속입건	
아남 정밀	위 원 장	여혜경		업무방해	5/4	고소고발
	사 무 장	이은혜		업무방해	5/4	고소고발
	교 육 부 장	신순주		업무방해	5/4	고소고발
	조 사 통 계 부 장	임현미		업무방해	5/4	고소고발
	복 지 후 생 부 장	안순옥		업무방해	5/4	고소고발
	전 사 무 장	주미경		업무방해	5/4	고소고발
	중원	문 화 부 장	임혜순		제3자 개입	5/3
전자	회 계 감 사	이민애		제3자 개입	5/3	고소고발
서울	문 화 부 장			업무방해	4/4	고소고발
	조 직 부 장			업무방해	5/4	고소고발
베어 링	쟁 의 부 장			업무방해	5/4	고소고발
	전 쟁 의 부 장			업무방해	5/4	고소고발
	조 합 원			업무방해	5/4	고소고발
신한 발브	조 합 원			업무방해	5/4	고소고발
	총 무 부 장			업무방해	4/20	고소고발
쟁 의 부 장			업무방해	4/20	고소고발	

노조명	노 조 직 책	이 름	나이	법 조 항	사건일시	법적처리
신한발브	부 위 원 장			업무방해	4/20	고소고발
한국	위 원 장	김남수		업무방해	5/3	고소고발
야쿠르트	사 무 장	장천석		업무방해	5/3	고소고발
	부 위 원 장	김광진		업무방해	5/3	고소고발
	부 위 원 장	방점례		업무방해	5/3	불구속입건
	부 지 부 장	박종원		업무방해	5/3	고소고발
	교 선 부 장	인문영		업무방해	5/3	고소고발
	영 남 지 부 장	송유태		업무방해	5/3	불구속입건
	지 회 장	이진우		업무방해	5/3	불구속입건
	서 울 지 부 장	연기원		업무방해	5/3	불구속입건
	서울부지부장	홍경표		업무방해	5/3	불구속입건
	서울부지부장	정계희		업무방해	5/3	불구속입건
	조 직 부 장	박기준		업무방해	5/3	불구속입건
	논 산 지 부 장	김영선		업무방해	5/3	불구속입건
크라	부 위 원 장	남영숙		업무방해	89.12/19	불구속입건
운전자	여 성 부 장	심기남		업무방해	89.12/19	불구속입건
	조 통 부 장	최복자		업무방해	89.12/19	불구속입건
	복 지 부 장	박을술		업무방해	89.12/19	불구속입건
	총 무 부 장	김명자		업무방해	89.12/19	불구속입건
	안전관리부장	김용현		업무방해	89.12/19	불구속입건
	체 육 부 장	오태인		업무방해	89.12/19	불구속입건
	조 합 원	전은주		업무방해	89.12/19	불구속입건
	조 합 원	조희자		업무방해	89.12/19	불구속입건
	조 합 원	강석기		업무방해	89.12/19	불구속입건
	조 합 원	최영옥		업무방해	89.12/19	불구속입건
	조 합 원	조정순		업무방해	89.12/19	불구속입건
지하	직 무 대 행	홍순영		업무방해,주거침입,폭력		고소고발
철	사 무 국 장	김명희		업무방해,주거침입,폭력		고소고발

노조명	노 조 직 책	이 름	나이	법 조 항	사건일시	법적처리	
	전 위 원 장	배일도		업무방해,주거침입,폭력		고소고발	
	역 무 1 지 부 장	윤재훈		업무방해,주거침입,폭력		고소고발	
	전 직 무 대 행	조상호		업무방해,주거침입,폭력		고소고발	
	조 직 부 장	김 강		업무방해,주거침입,폭력		고소고발	
	교 육 부 장	김선구		업무방해,주거침입,폭력		고소고발	
	쟁 의 부 장	김용진		업무방해,주거침입,폭력		고소고발	
	쟁 의 차 장	이광열		업무방해,주거침입,폭력		고소고발	
	승무성수지회장	장영길		업무방해,주거침입,폭력		고소고발	
	차량창동지회장	최종진		업무방해,주거침입,폭력		고소고발	
	광림전자	사 무 장	고성순		업무방해	5/3	사건구속
조 직 부 장		이혜순		업무방해	5/3	영장	
교 육 부 장		강영자		업무방해	5/3	고소고발	
총 무 부 장		임미옥		업무방해	5/3	고소고발	
총 무 차 장		김경환		업무방해	6/1	불구속입건	
문 화 부 장		송미자		업무방해	6/1	불구속입건	
쟁 의 차 장		안명희		업무방해	5/3	고소고발	
제일전산		위 원 장	고인자		쟁의조정법위반	5/3	고소고발
승용		위 원 장	최성규		업무방해	5/3	고소고발
전자		부 위 원 장	이영이		업무방해	5/3	고소고발
	대 의 원	장순옥		업무방해	5/3	고소고발	
	대 의 원	김정자		업무방해	5/3	고소고발	
	남성	위 원 장	김경옥		업무방해	3/5	고소고발
전기	부 위 원 장	고미경		업무방해	3/5	고소고발	
	부 위 원 장	손정남		업무방해	3/5	고소고발	
	사 무 장	신경옥		업무방해	3/5	고소고발	
	조 직 부 장	전경임		업무방해	3/5	고소고발	
	대 의 원	최명자		업무방해	3/5	고소고발	
천지산업	교 육 부 장	이승동		업무방해	5/19	불구속입건	

노조명	노 조 직 책	이 름	나이	법 조 항	사건일시	법적처리
천지 산업	대 의 원	최명자		업무방해	3/5	고소고발
	사 무 장	박복규		업무방해	5/27	불구속입건
	회 계 감 사	최상문		업무방해	5/27	불구속입건
	선 전 부 장	장권식		업무방해	5/27	불구속입건
	복 지 부 장	경정택		업무방해	5/27	불구속입건
	총 무 부 장	김정권		업무방해	5/27	불구속입건
	조 직 부 장	고덕기		업무방해	5/27	불구속입건
	문 화 차 장	조상용		업무방해	5/27	불구속입건
	교 육 차 장	백정숙		업무방해	5/27	불구속입건
	대 의 원	권충대		업무방해	5/27	불구속입건
중원 전자	정 방 대 원	조기선		업무방해	5/27	불구속입건
	정 방 대 원	권혁진		업무방해	5/27	불구속입건
	정 방 대 원	정형준		업무방해	5/27	불구속입건
	부 위 원 장	고춘미		업무방해	5/25	고소고발
	부 위 원 장	박명희		업무방해	5/25	고소고발
	부 위 원 장	안수연		업무방해	5/25	고소고발
	회 계 감 사	김민애		업무방해	5/25	고소고발
	회 계 감 사	김혜정		업무방해	5/25	고소고발
	사 무 장	조귀제		업무방해	5/25	고소고발
	조 직 부 장	오정애		업무방해	5/25	고소고발
협	조 직 차 장	이현미		업무방해	5/25	고소고발
	쟁 의 부 장	김진열		업무방해	5/25	고소고발
	교 육 차 장	이숙자		업무방해	5/25	고소고발
	선 전 부 장	정창식		업무방해	5/25	고소고발
	선 전 차 장	박승희		업무방해	5/25	고소고발
	조 통 부 장	양동현		업무방해	5/25	고소고발
	조 통 차 장	김미선		업무방해	5/25	고소고발
	후 복 부 장	이혜숙		업무방해	5/25	고소고발

노조명	노 조 직 책	이 름	나이	법 조 항	사건일시	법적처리
	후 복 차 장	장수경		업무방해	5/25	고소고발
	체 육 부 장	장복섭		업무방해	5/25	고소고발
	문 화 부 장	임혜순		업무방해	5/25	고소고발
	문 화 차 장	한순희		업무방해	5/25	고소고발
	삼성 계약	위 원 장	김은임		제 3자개입, 업무조사	5/
교육	부 위 원 장	김영순		제 3자개입, 업무조사	4/	불구속입건
보험	조 직 부 장	안수석		업무방해, 폭력	6/1	불구속입건
	위 원 장	이상학		업무방해, 폭력	6/1	수배
	부 위 원 장	이대성		업무방해, 폭력	6/1	수배
	홍 보 부 장	홍은숙		업무방해, 폭력	6/1	수배
	복 지 부 장	김학인		업무방해, 폭력	6/1	수배
남부	위 원 장	황병관		업무방해, 폭력, 제 3자개입	4/6	수배
기금	쌍 원 문 화 부 장	최기태		업무방해, 폭력, 제 3자개입	4/6	불구속입건
서노	부 의 장	김경은		집시법	4/29	고소고발
협	부 의 장	차수련		제 3자개입, 업무조사	3/	수배

주 : 1990년 6월 18일 현재—고소고발, 불구속입건 인원 : 140명, 구속자 : 41명, 수배 : 8명

서울지역노동조합협의회

## 조합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

조합원 여러분!

회사측의 공권력 투입으로 인해 거리로 내쫓긴 이후 회사측은 계속적으로 조합원들 가정에 노조비방 유인물을 보내는 한편 관리자(주임, 계장)나 조장을 통해 전화로 “직접 회사로 나와서 일하라”고 요구하며 정당한 우리의 파업농성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2차로 보낸 유인물에서 회사는 마치 노조원들의 파업으로 인해 회사가 직장폐쇄를 하게 됐고 싸움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회사측의 유인물에 담긴 내용에 대해 하나하나 얘기해 봅시다.

(1) 최근의 노사분규가 저희 회사가 창립된 후 지난 6월 8일 최초의 직장폐쇄라는 사태까지 이르러 그 이유야 어쨌든 여러분들의 생활터전이 위협을 받게 된 점에 대하여 사원 여러분과 가정에 대단히 미안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사분규’라는 말부터 봅시다. ‘노사분규’는 다름아닌 노동자들의 단체 행동·쟁의 또는 파업을 말하는 것으로 산업평화를 어지럽히는 좋지 못한 행동이라는 의미로서 기업주나 TV 언론에서 흔히 즐겨쓰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파업’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노사분규’란 말은 옳지 못한 말입니다. 그리고 회사는 “직장폐쇄사태까지 이르러 우리들의 생활터전이 위협받게 된 데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우리의 정당한 파업농성에 지불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단협 지침만을 성실히 이행하며 계속 18차 교섭까지 493원(7%)을 고수하며 그것도 모자라 월급에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 우리의 생활을 곤란하게 만들었으며, 그동안 뼈빠지게 일해 회사를 번창시킨 우리에게 공권력을 투입·무차별 폭행해 거리로 내쫓았습니다. 이렇고서 어떻게 미안하다느니의 말을 당당히

할 수 있습니까?

(2) 또한 오늘의 이 사태가 일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선량한 대다수의 근로자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일부 과격한 근로자의 교묘한 책동에 원인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회사로서도 선량한 근로자 여러분들을 보호해 드리지 못하고 본의 아니게 고생시켜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먼저 묻고 싶습니다. 일부 과격 근로자가 누굴 말하는지?

회사는 우리 조합원들이 추천하여 직접 뽑은 라인대표, 상집간부를 과격근로자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량한 다수의 근로자가 일부 과격 근로자에 의해 이끌려진다고 말하고 있고 더욱 놀라운 것은 선량한 다수의 근로자가 이토록 이끌려진 데 대해 회사가 보호해주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조합원들이 몇몇 사람에 의해 이끌려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코 아닙니다. 회사는 우리 조합원을 판단도 생각도 할 줄 모르는 “남이 하면 무조건 따라하는 사람”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회사측의 이같은 망상은 전조합원을 무시하는 발언이며 우리를 우롱하는 처사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만약 집행부가 잘못했다면 조합원들이 먼저 들고 일어나 거부했을 겁니다).

(3) 구로공단내 수백개 사업장 중에서 소위 민주노조 사업장만이 매년 연례행사로 꼭 파업을 해서 임금을 올려야 하는 이 슬픈 현실을 사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소위 민주노조 회사는 동종업체만큼도 임금인상이 안될 것이라고 여러분께서는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회사는 올해 태업, 파업으로 벌써 두 달 이상의 귀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 한 달이 같는지 두 달이 같는지 아니면 더 길어질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파업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당장 자신과 가족의 생계가 막막하고 불안한 날이 계속되는데, 파업 좋아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럼, 우리는 왜 파업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는 임금인상을 맞이한 후 가급적 원만히 타결짓기 위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머리띠 두르기, 운동장집회 등 단체행동을 통해 회사측에 정당성을 알리며 성실히 교섭에 임해 왔지만, 회사는 18차 교섭까지 우리들의 생활은 아랑곳하지 않고 493원 (7%)만을 고수했으며, 심지어는 2개월치 자재를 하청으로 빼돌리는 것을 보더라도 임금인상타결 의지는 전혀 없고 과거의 “주는 대로 받고 시키는 대로 일하는 노동자”로 돌려놓고 말겠다는 시대착오적 생각으로 불성실하게 나왔으며, 오히려 장기파업을 유도해 보겠다는 태도로 임했습니다. 우리 회사 특징 중 하나는 해마다 임금인상을 들어줄 거면서 매년 10%만 내놓고 있다가 우리들이 파업에 들어가면 그제서야 임금을 올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회사는 당당히 ‘태업’이라 말하지만 지난 4월 조합원들이 생산의욕이 없어 스스로 물량을 줄인 것은 ‘단체행동’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단체행동을 태업이라 몰아붙이는 행위는 상식을 벗어난 행위입니다.

(4) 이렇게 오랫동안 일을 하지 않고서 회사가 온전히 지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께서도 회사와 여러분이 함께 파멸의 구덩이로 길을 택하실 분은 아무도 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생산공장의 생명은 공장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의 어떠한 문제도 생산라인을 움직여 가면서 풀어야 한다고 회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존립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장은 물건을 만들어 팔고 남은 이윤을 얻기 위해 회사를 차립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빨리 임금교섭을 타결시켜 공장을 가동시켜야 하는데 그런 생각은 안하고 어떻게든 노조를 무력화시키고 낮은 액수로 임금을 타결지으려고 하면서 한편으론 파업농성중인 조합원들에게 임금교섭 타결이 안된 시점에서 공개적으로 일하러 나오라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합법적인 파업농성을 방해하는 행위로 부당노동행위이며 조합원들을 분열·희유하려는 파렴치한 짓입니다.

(5) 사원 여러분! 회사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회사로 돌아오셔서 생산작업에 임해 주십시오. 우리도 이제 서로 오해와 갈등을 풀어버리고 우리 나우정밀을 즐거움과 희망이 있는

곳으로 만드시기 않으시겠습니까? 그것만이 여러분이 살고 회사도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의 이웃회사이며 나우노조와 같은 소위 민주노조인 중원전자의 생산사원들도 이젠 거의 다 회사로 돌아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생산을 하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지요.

우리는 생활상이 어려움도 참아내며 40여 일에 걸친 피눈물나는 파업농성투쟁을 해온 이유가 뭘니까? 회사로 다시 들어가 일하기 위해 이토록 투쟁해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회사는 장기파업 유도도 모자라 월급에 무노동무임금을 적용, 조합원들의 생활상의 어려움을 빌미로 집요하게 희유책을 펴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교섭석상에서 항상 주장하는 말이 “다른 회사는 보지 말고 우리 나우만 놓고 얘기하자”고 줄곧 말하면서 중원이 튼튼할 때는 얘기도 안하면서 중원이 회사의 분열책으로 내부가 약화되니까 중원을 비교하며 합리적인 방법을 찾자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 조합원들이 중원전자의 상황을 보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출근투쟁을 해오자 중원을 비교하며 우리들을 동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분열책을 써오고 있습니다.

회사가 말한 대로 합리적인 방법을 찾기 위한 빠른 길은 돈을 쥐고 있는 회사가 갈등을 풀고 임금교섭에 성실히 나와야 합니다.

(6) 노·사는 서로가 적이 아닙니다. 적이 되어서도 안되고 결코 적이 될 수도 없습니다. 노·사는 한 배를 같이 타고 험한 바다를 항해하는 사공이며 서로가 이해와 협조, 양보와 사랑 속에 같이 살아가야 하는 동반자인 것입니다.

노·사가 동반자로 나아가야 된다는 건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회사가 임금인상과정에서 보여준 태도가 과연 양보와 사랑, 이해와 협조 속에서 한 태도일까요? 정당한 임금인상을 하자는데 우리들의 동지 3명을 구속시키고, 한밤중에 구사대가 칼부림을 하며, 트럭으로 조합원들을 깔아몽개기 위해 달려들고, 분말소화기를 뿌리며 폭행을 일삼고, 특히 교섭 전날이면 우리들의 기를 죽이기 위해 폭력적 만행을 저지르며 설치는 등…… 과연 이러한 모습들이 회사가 우리를 동반자로 여기는지 의심스러우며 우리를 적으로 여긴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7) 사원 여러분, 투쟁만을 목적으로 삼지 마시고 회사를 부정적인 시각에서만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올해에는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노사 쌍방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극한 투쟁을 자제하면서 조용히 임금인상을 끝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노사는 대립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화합하여도 얼마든지 잘 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언제까지 이러한 투쟁을 끌고가시렵니까? 이번을 계기로 앞으로 회사에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이러한 무모한 투쟁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다수 선량한 근로자와 회사를 이간시키는 불순세력과 그들의 무책임하고 분별없는 행동 및 날조된 유언비어에 대하여 끝까지 파악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년부터는 대부분의 다른 회사처럼 임금인상은 파업을 하지 않고도 서로 이해와 양보 속에 원만히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진정 산업평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낮게는 1,200원 높게는 3,000원까지 높은 수준으로 임금이 타결됐는데 유독 구로지구 특히 핵심 노조사업장만 집중적인 노조탄압이 들어오고 있으며, 구로지구 사장단이 구성돼 임금을 낮은 수준으로 타결시키려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동종업체 임금만 오르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의미없는 일이며, 회사는 그 점을 노려 임금인상 투쟁열기를 꺾어보려는 것입니다.

회사가 말하는 '불순세력'이 의미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상집간부와 라인대표들입니다. 특히 구속된 이은순 부위원장과 강연미 선전부장을 '학생출신'이란 이유로 회사는 '불순' 운운하며 비방을 일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 두 사람은 대학출신으로 충분히 좋은 여건에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노동현장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노동자들이 이 사회에서 인간대접을 받지 못하고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일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미약한 힘이나마 노동자들과 함께 개선해 나가고 정당한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동을 하러 왔다고 봅니다. 특히 두 사람은 조합활동 과정에서 자신의 몸도 돌보지 않고 헌신적으로 해오지 않았습니까? 라인에서 일할

때는 언니로서 동생으로서 어려움이 있을 땐 함께 하고 기쁜일이 있을 때도 함께 하는 다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임금인상 투쟁과정에서 억울하게 회사측의 고소고발과 개별적으로 짊어져 남부서로 연행돼 구치소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측의 주장대로 두 사람이 불순세력이었다면 어떻게 자신과 동료들의 임금인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구속을 각오하고 싸울 수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회사측은 야비하게 두 사람을 인신공격하는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조합원과 두 사람을 이간질시키려는 것이며, 은연중에 학생출신에 대한 반감을 조합원에게 갖게 하려는 술책입니다. 회사측에 묻고 싶습니다. 불순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단지 대학교를 나왔다고 불순입니까? 사람답게 살겠다는 게 불순입니까? 회사는 아직도 전근대적인 사고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MBC방송국 노조, 각 언론사, 선생님, 박사들(연구전문직)도 노동자로서 노동조합을 만들어 활동해 나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도 많이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불순세력이어야 하겠네요?

그리고 회사가 무책임하고 분별없는 행동·날조된 유언비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것은 곧 상집간부·라인대표를 뽑아준 조합원 전체를 무시·우롱하는 발언이며 나아가 노조를 탄압하겠다는 의도인 것입니다. 회사가 이런 태도를 갖고 '노사화합'이니, '산업평화'이니 '양보와 이해'니의 얘기를 당당히 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8) 또한, 이제부터라도 나오셔서 회사에서 성실하게 작업하시는 분의 신변에 대하여 보호하고, 이번 분규가 끝난 후에도 파업에 끝까지 가담한 사람들로 부터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철저히 보호해 드릴 작정입니다. 자신의 길은 자신이 판단을 해야 합니다. 깨끗한 의지로 무엇이 정의로운 일인지 현명한 판단을 하시어 회사로 돌아오셔서 함께 일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회사로 나와서 생산에 참여하는 사람의 행동이 몇몇한 것이라면 회사가 그 사람들의 신변보호에 철저히 신중을 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또한 나와서 일하는 사람들끼리 라인을 구성해 주겠다고 얘기한 데 대해서는 더욱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단체협약상 라인해체 및 이전은 조합과 반드시 사전협의한다(단체협약 3장 인사 15조 1항 라인해체 및 배치전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사 임의대로 라인을 해체 구성을 할 수 없습니다. 한편으로 회사가 굳이 급한 일이 없는데 조합원들을 분열,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이유로 불법인 줄 알면서 일하러 회사에 나오라고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회사는 지금 뭔가가 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생산과 부장 등이 조합원 가정에 방문을 하는 일이 벌어지죠.

조합원 여러분!

우리 조합원들은 40일이 넘도록 힘차게 흐트러짐없이 잘 싸워왔습니다. 매일같이 전경들과 몸싸움을 각오하며 출근투쟁을 벌여왔고 우리의 정당한 파업농성을 알리고 회사측의 노조탄압을 폭로하기 위해 국회앞투쟁과 관악노동사무소앞 항의방문, 그리고 사장집·상무집 항의방문, 계열사 소식지배포, 시장 역주변 가두선전 등을 통해 끊임없이 싸워왔습니다. 개인사정이나, 병상, 산업재해 등의 이유로 파업농성에는 참여치 않는 조합원들도 우리의 싸움에 마음 속으로는 함께 해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현재 회사측에서는 28일 목요일 교섭 때 기본급 970원, 생산장려수당 85,000원의 대안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비록 우리 요구안에는 훨씬 못미치는 금액이지만 그동안 조합원 여러분들이 단결된 모습으로 열심히 싸웠기 때문에 이나마 대안이 나왔다고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더 힘들고 생활상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참고 함께 싸워나간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참여가 임금인상을 승리로 이끄는 큰 지름길입니다. (3)

1990년 6월 30일

나우정밀노동조합

## 서울지역 고용실태조사보고서

1. 조사시기 : 1990. 10. 29~11. 9.
2. 조사사업장 : 40개 사업장(전기전자 업종 : 25개, 기계금속 : 6개, 섬유 : 4개, 기타 : 5개)
  - 1) 구로 — 25개 사업장  
나우정밀, 중원전자, 한국광학, 태광하이텍, 남성전기, KDK, 상미, 아남정밀, AMK, 천지산업, 협신정공, 신한발브, 슈어프로덕츠, ○○상사, 영창실업, 영진파일작물, 도신정밀, 동해실업, 오토론, 세진전자, 백산전자, 한국음향, 대동전자, 세일로, 성화
  - 2) 영등포 — 8개 사업장  
유원, 세풍전자, 광림전자, 세원, 제일전산, 지·비전자, 삼천리기계, 기아특수강
  - 3) 중동부 — 7개 사업장  
삼주전기, 삼화휴즈, 서울주파, 삼성계약, 동부금속, 모토콜라코리아, 아남산업
3. 조사방법 : 면담조사(노조나 개인을 통한 조사)
4. 조사결과 보고

### 자연감원

1. 회사명 : 29개 사업장(72.5%)  
나우정밀, 중원전자, 한국광학, 태광하이텍, 남성전기, KDK, 아남정밀, AMK, 도신정밀, 동해실업, 오토론, 세진전자, 백산전자, 한국음향, 대동전자, 천지산업, ○○상사, 영창실업, 세일

로, 슈어프로덕츠, 성화, 유원, 광림전자, 삼주전기, 삼화휴즈, 모토롤라, 아남산업, 삼성제약

## 2. 자연감원의 양상

전반적으로 1988년 말 인원보다 1990년 현재 인원이 줄어들었으나 섬유업종과 전기전자업종에서 인원감소 추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조사에 응한 40개 사업장 중 종업원수의 연도별 추이에 응답한 33개 사업장의 경우 1988년 말 전체 종업원이 22,900명이었으나 1990년 현재 19,520명으로서 1년 10개월 사이에 14.8%의 인원 감소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로공단의 경우 1987년 종업원수가 74,466명(가동업체 260개)에서 1990년 6월 현재 58,756명(가동업체 253개)으로 15,710명이 줄어들어 21.1%의 인원 감소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시사저널』, 1990년 1월 1일자).

대표적인 사업장 인원감소 현황

사업장 명	1988년 말	1990년 현재
중원전자	750	600
한국광학	300	200
남성전기	1,300	900
동해실업	630	540
한국음향	800	700
천지산업	340	280
영창실업	470	240
세 일 로	700	500
유 원	300	230
광림전자	250	165
삼주전기	400	330
삼화휴즈	120	79
모토롤라	4,000	3,000

또한 1989년 말부터 현재까지 대한광학, 크라운전자, 남지전자, 대림합성수지, 유진화성, 태성, DS, 진흥전자, 태원전기 등이 이전했거나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 3. 인원을 충원하지 않는 이유

노조를 악화시키기 위해 하청으로 물량을 빼는 경우와 설비자동화, 판매부진, 경영악화로 인원을 충원하지 못하는 경우, 일손을 구하기가 어려워 충원을 하지 못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 세 가지의 경우가 중복되어 나타난 사업장도 있으나 중요한 사항 하나로 편제하여 분석했다.

### 1) 노조악화 의도로 물량을 하청으로 빼는 경우

나우정밀, 중원전자, 한국광학, 남성전기, AMK, ○○상사, 영창실업, 슈어프로덕츠, 광림전자, 지·비전자, 제일전산, 삼주전기, 삼화휴즈

### 2) 설비자동화의 경우(PCB 자동삽입기, 로봇, 자동직기 등 도입)

태광하이텍, KDK, 상미, 세진전자, 유원, 서울주과, 모토롤라코리아, 아남산업

### 3) 경영악화·판매부진의 경우

대동전자, 세일로

### 4) 일손을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

도신정밀, 동해실업, 오토론, 한국음향, 천지산업, 성화, 세풍전자, 삼천리기계

## 4. 자연감원으로 나타난 문제점

노동강도 강화

—라인에서 1인이 하던 일을 2인이 하게 됨

—조합원들 불안감

—비조합원들 노조에 대해 투쟁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등 노노갈등 유발

## 5. 현재 노동조합의 대처형태

단협에 인원 유지조항 명시

—한국광학, 서울주과, 광림전자, 슈어프로덕츠



—오토론(회사에 부족한 인원 70명에 대해 채용요구해서 50명 충원)

본급 인상, 주택수당, 벽지수당 등 요구, 이전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임금요구)

**외주처리(하청)**

1. 회사명—28개 사업장(70%)

나우정밀, 중원전자, 남성전기, KDK, 상미, AMK, 도신정밀, 오토론, 세진전자, 한국음향, 천지산업, 신한발브, ○○상사, 영창실업, 세일로, 슈어프로덕츠, 성화, 세풍전자, 광림전자, 지·비전자, 세원, 삼천리기계, 기아특수강, 제일전산, 삼주전기, 삼화휴즈

2. 하청의 양상

하청을 주고 있는 28개 사업장은 물량의 10~70, 80%까지 하청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전체 생산량의 50% 이상을 하청에서 생산하고 있는 사업장도 8개 사업장이다.

하청을 주고 있는 사업장은 자연감원과 연관되어 하청생산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조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로 하청으로 물량을 빼내는 경우가 민주노조의 경우 대부분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생산량의 50% 이상을 하청에서 생산하는 사업장은 중원전자(60%), 상미(50%), 영창실업(70~80%), 슈어프로덕츠(60%), 광림전자(50%), 지·비전자(60~70%), 삼화휴즈(60%), 원림상사 등이다.

**공장이전(37.5%)**

1. 회사명 : 15개 사업장

1) 1990년 현재—1991년까지 이전문제 예상

한국광학, 아남정밀, 영진파일직물, 유원, 기아특수강

2) 향후 3년내 이전문제 예상 사업장

중원전자, KDK, AMK, 백산전자, 광림전자, 지·비전자, 유원, 삼천리기계, 서울주파, 삼성제약

2. 노동조합의 대처형태

이전투쟁 진행중인 사업장—기아특수강(이전할 때의 요구를 중심으로 기

단협에 이전문제 합의명시—중원전자, 세원

그외 이전문제에 대한 교육, 조사, 사업진행중이나 아직 구체적 계획이나 대안이 없는 상태임.

**폐업(예상)—7개 사업장(17.5%)**

1. KDK—노조탄압을 위한 위장폐업 가능성

상미, AMK, 서울주파

협신전공—만성적인 적자로 노조에서 폐업을 제안한 바 있음

지·비전자—노조탄압 의도로 위장폐업 가능성

제일전산—1990년 11월 15일자로 회사에서 폐업공문왔으나 노사교섭으로 폐업철회

2. 노조의 대처형태

단협에 폐업시 노조와 합의명시—슈어프로덕츠, 지·비전자, 제일전산(노사협의)

**임시직(경비, 청소직 제외한 생산부서 취업현황)**

1. 회사명 : 13개 사업장(32.5%)

남성전기, 아남정밀, 동해실업, 세진전자, 백산전자, 대동전자, ○○상사, 영창실업, 삼천리기계, 기아특수강, 모토롤라, 아남산업, 삼성제약

2. 구체적 양상

임시직의 채용 인원은 4명에서 100명까지 다양한데 임시직 채용규모가 큰 데는 모토롤라, 아남산업, 삼천리기계, 백산전자, 대동전자, 아남정밀 등으로 20명 이상 생산라인에서 채용중이다. 임시직 노동자의 채용절차는 서울주파가 노조와 사전합의하기로 되어 있을 뿐 거의 대부분 회사가 알아서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 「서울지역 고용문제의 현황과 대응」, 1990. 12. 1 서노협·서울노운협)

## 경영합리화 계획

〈예: 풍산금속〉

### 1. 개요

- 1) 누적되는 경영수지의 악화에 대처
- 2)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적정 인력 운영
- 3) 여유인력에 대한 합리적 조정 추진
- 4) 정상적 조업을 통한 안정된 직장의 보장 및 근로조건 개선

### 2. 목적

- 1) 합리적인 공장 경영을 통한 채산성 유지
- 2) 노동생산성 재고를 통한 인력의 조정
- 3) 대정부 수주물량의 적기 공급
- 4) 제품의 품질 및 가격의 경쟁력 확보

### 3. 경영전망

#### 1) 경영수지

##### (1) 판단기준

\* 1987년, 1988년, 1989년 ; 실적치 적용, 1989년은 11월 말 기준 추정

\* 1990년 ;

- 매출액 ; 조달본부 예상 수주량 기준
- 재료비 ; 가격은 1989년 구입단가 적용(가격인상 미고려)
- 노무비 ; 1990년도 자연감소 예상인원의 1/2을 반영 10% 임금인상 고려
- 경비, 일반관리비, 금융비용 ; 예상지출액
- 재고자산(제품, 재고품)은 기초, 기말을 동일 수준으로 가정

### (2) 인력조정계획

(단위:명)

구 분		인 원	비 고
1989년 말 총원		4,140	
1990년 조정계획	자연감소	396	
	전형감소	744	
계		1,140	
1990년 말 총원		3,000	
조정비율(%)		27	

## 경영합리화 계획 분석

〈예 : 풍산금속 노동조합〉

경영위기 극복을 위하여 노조는 생산성 향상에 지속적으로 협조하는 대신 회사는 경영합리화 계획의 시행에 있어 노조측의 인력감축에 따른 대안을 대폭 수용하여 근무태도불량자, 사내 기강을 문란케 하는 자 등의 감축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하여 조정실시한다.  
적용시기는 1990년 1월 1일 이후부터

사측의 최종안을 접하며 몇 가지 지적해 보고자 한다. 경영악화로 인한 인원감축의 직접적인 원인이 1988년 1989년 동안에 누적된 적자, 노사분규라 말하고 그것으로 인해 인원감축과 근무형태 변경은 불가피하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1988년도를 한 번 되돌아보자. 민족민주운동의 성장으로 인해 정치적 공간이 확대되고 방산업체인 (주)풍산에도 합법적인 노조를 만들게 됐다. 그 과정에서 노조에 대한 왜곡된 생각으로 인해 해고자가 생기게 됐고 그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며 조합원들의 단결력으로 복직이 이루어졌고 또한 단협체결과정에서 위원장의 독선으로 협약이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항의로 온산출정도 하게 됐다. 회사는 조합원들의 불만을 조합중단이라는 것으로 차단시켰고 그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를 조합원들에 떠넘기다시피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조합중단의 적법절차에 관한 자료를 몇 번인가 사후에 또 노동부·세무소 쪽으로 요청을 했으나 그에 대한 대답은 묘연하고 다른 곳으로 전가시키기만 했다 이렇듯 사측의 일방적 일처리에 분노하고 적법성을 확인하려 했으나 대답은 여전하고 적법절차를 무시한 것과 극한투쟁을 유발시켜 생산을 못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원계획과 근무형태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 경영악화의 원인

회사는 경영만 어려우면 인원감원이라는 독특한 방법으로 경영개선을 하고 있다. 1982년에 천 여명의 감원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쉽게 이해가 가리라 생각한다. 인원을 채용하는 것은 회사의 고유권한이다. 그러나 필요할 시에는 마음대로 부러먹고 이윤이 적어지면 가차없이 감원·해고시키는 경영방식은 전근대적이고 주먹구구식이며 (주)풍산의 인사관리가 얼마나 허술한가를 알 수 있다.

또한 자유시장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술개발로 제품의 질과 성능면에서 뛰어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기술개발 투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저임금 장시간노동을 바탕으로 수출주도형 경제를 존속시켜 가는 한국경제의 모순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안강공장의 기술개발투자액은 어떠한가. 1987년도 매출액 926억 중 4억 4천여만 원, 1988년 매출액 740억 중 8억 2천여만 원, 1989년 매출액 940억 중 6억 2천여만 원 등 매출액의 1% 미만이라는 극히 미약하게 기술개발에 투자했다. 이는 앞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신상품 개발과 적절한 인사관리보다 저임금 장시간노동에 유지 편승하여 회사를 이끌어왔다고 보면 된다. 특이한 것은 (주)풍산 전체의 시험연구비가 1987년에 5억 5천여만 원, 1988년 3억 3천여만 원으로써 그만큼 연구비에 인색했으며, 원재료관리 비효율적인 공정개선 등 여러가지 문제지적이 있다. 또한 1985년까지는 정부의 방산업체 육성책으로 소재로스벨 공정간 불량로스를 방산품 단가책정시 반영반응과 동시에 증가되는 인력에 대해서도 함께 반영을 받았다. 그러나 1985년 방산법개정으로 1986년 이후론 이에 대한 반영조치가 중단됨으로써 악화요인이 되기도 했다. 그러면 회사는 이런 내부적 사정 및 잘못된 점들을 반성하고 조합원들에게 공개한 적이 있었는가. 그러지 못했다. 그것도 전문경영인이 아닌 낙하산식 인사가 이루어지고 친인척 및 군출신들을 주요 자리에 앉힘으로써 문제만 야기시키는……

### 합리화 계획의 저의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 일방통행식의 경영합리화 계획을 세우게 된 의도를 한 번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1989년 조업중단 이후 누적되어온 현장의 불만들과 정부와 경제단체협의회 의 구도 속에서 올해 임금인상에 대한 조합원들의 요구와 투쟁력을 약화시키려는 것과 노동조합 자체의 무력화 내지 어용화를 획책하려는 데 있다. 실제적으로 휴가와 더불어 인원감원설은 현장분위기를 위축시키기에 충분했다.

인원감원이라는 것으로 더욱더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강도 및 노무관리로 강화하여 이윤극대화를 노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1991년 3월 완공목표로 미국 현지의 신도공장을 건설하고 그에 따른 경영악화를 메꾸려고 발버둥치고 있다. 허나 상식적으로 경영이 어렵다면서 몇백 억씩 투자하여 외국에 공장을 세운다는 것은 경영악화라는 말에 신빙성을 주지 못한다. 또한 그 공장을 한국에 설립한다면 얼마나 많은 실업자가 구제되고 한국경제발전에도 이바지가 되겠는가. 청문회 석상에서 72살에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뽀뽀스런 거짓말이 되살아난다. 또다른 의도 중 지역 및 4개 지부 연대적인 측면도 단사문제에 매몰시키면서 막아보자는 데 있다.

최종안을 보면 큰 덩어리는 철회된 것 같으면서도 여운을 남긴 것은 사내 질서 문란자에 대한 전제조건이다. 이는 앞으로 다가올 임투, 단투, 지부 및 본조 위원장 선거에 대비하여 노조에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조합원을 위촉시킴과 동시에 여러 면에 악용의 소지가 있다. 이러한 사측의 의도를 보면서 저들의 낱아빠진 사고방식과 항시적으로 노조를 무력화, 어용화시키려는 노력이 얼마나 끈질기고 악착스러운지를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주)풍산의 어르신네들에게 부탁한다. 말로써 산업평화 운운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달라. 회사는 보고 분명히 알 것이다. 1988년의 대중들의 불만과 요구사항, 불 같은 투쟁력을. 아무리 억압하여도 노동자들은 결코 죽지 않았다는 것을.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스프링처럼 화신과 같은 열기로 터져나온다는 것을 회사는 망각해선 안된다.

## 국민에게 드리는 글

###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체의 탄압책동은 즉각 중지되어야 합니다

#### 1. 민자당의 정권연장 음모 속에 1200여 노동자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이 땅의 진정한 민주화를 갈망하는 국민여러분!

기만적인 5공 청산과 동시에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이 하루아침에 손을 맞잡고 반민주세력의 연합, 민자당 결성이라는 정치쿠데타를 통해 독재정권의 유지에 혈안이 되어 있는 지금, 사회 한 구석에서는 “인간답게 살아보고 싶다”는 1천만 노동자의 피맺힌 절규가 노태우정권과 악덕자본가의 노동운동 압살정책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대책없는 공장이전, 사기통합, 공장매각을 빙자한 집단해고로 구로공단 1,200여 노동자가 줄지에 길거리로 내동댕이쳐지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 2. 집단해고 철회하고 우리 일터 보장하라.

구로 1공장의 크라운전자 조합원은 1989년 12월 1일자로 사장 윤봉수의 의도적인 경영적자를 통한 일방적 집단해고와 사기통합에 의해 일터에서 쫓겨나 100여 일 넘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기업주와 정부는 집단해고 철회와 직장보장을 요구하며 평화적 총회를 하고 있던 200여 조합원을 백골단을 동원하여 강제해산시키고 신정숙 위원장 등 4명을 구속하고, 계속해서 일터보장을 요구하는 조합원에게 남부서 연행과 정문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남지전자에서도 윤봉수는 의도적 적자조장과 하청공장을 세워 조합원 70명을 집단해고했으며, 이의 철회를 요구하는 조합원을 수차례에 걸쳐 남부서로 강제 연행하고 있습니다.

대한광학에서는 대책없는 천리길 공장이전(서울→창원; 창원에는 팻말 하나

에 모래 한 차밖에 없는 벌판으로 700여 조합원이 일할 수 없는 상태)에 반대하는 조합원을 올 2월 1일 사장 나정환의 112신고 한 통화로 백골단을 동원하여 강제 연행하고 3명의 조합간부를 구속하는 일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대림합성수지에서는 사장 곽달환이 위장부도를 내고 잠적하여 400여 명의 조합원이 체불임금도 받지 못한 채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차가운 공장에서 농성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탄압은 1,200여 명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존권 말살과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파괴하려는 음모입니다. 최근의 단병호 전노협 의장, 권용목 부의장을 비롯한 노동조합 지도자들에 대한 구속과 전국 도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동운동 탄압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10년이 넘게 피땀 흘려 일해온 노동자에게 돌아온 것은 장시간노동과 쥐꼬리만한 임금, 산업재해로 버려진 몸뚱이였습니다.

1987년 이래로 민주적인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권리를 되찾으려 하자 기업주와 정부는 경영상의 이유를 들며 일터에서 저희들을 내쫓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생존의 위기 앞에 저희 4개사 노동자는 공동대처를 선언했습니다.

### 3. 불법부당한 노동부, 남부서의 직무유기, 반노동자적 횡포를 고발한다.

악덕기업주와 공권력의 횡포는 돈없고 백없는 노동자의 서글픔을 더욱 뼈저리게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관악사무소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와 악덕기업주를 고발하자 근로감독관이란 사람이 '법대로 하고 있다', '이미 우리손을 떠난 사안이다', '해산하라'며 도리어 조합원을 협박했습니다. 3월 2일에는 수사촉구를 하러 간 조합원들에 대해 노동부는 남부서에 연락하여 항의 노동자들을 연행하게 하는 등의 작태를 계속했습니다.

남부서는 112전화 한 통이면 어느 때든 달려와 무차별 폭행을 통한 강제연행, 불법구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3일에는 조합원을 연행하여 48시간 잠을 안 재우며 구금하고 총과 수갑을 내보이며 '우리 일터 보장하라'는 우리의 절규를 고문과 공갈협박으로 짓밟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형평없는 공권력의 횡포에 분노하며 노동부의 직무유기, 남부서의 공권력 횡포에 대해 그 책임자의 처벌과 구속된 동지를 즉각 석방

할 것을 주장합니다.

### 4. 민주세력 총단결로 반민주 야합 박살내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내자.

노동형제 민주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임무는 이 땅의 진정한 민주화와 산업평화를 위해 오직 민주세력이 하나로 힘차게 단결투쟁하는 길뿐이 없다고 믿어집니다. 우리 눈 앞에 놓여진 사기이전, 집단해고를 박살내고 생존권 및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해 저희들은 투쟁의 선봉에서 힘차게 싸워나갈 것입니다.

1987년 이래 우리 노동자의 땀속 깊이 새긴 노동자의 권리, 민주주의의 소중함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4천 만 민주역량을 결집한 반노동자적 반민주적인 세력을 물리칩시다!!

1990. 3. 9

생존권 및 민주노조사수를 위한

크라운, 남지, 대한광학, 대림합성수지 노동조합 공동투쟁위원회

## 경제단체협의회 노사분규 대책지침

노조측에서는 전조합을 조직하여 쟁의행위를 위한 갖가지 전략을 세워 실천하고 있다. 기업도 전관리조직을 동원, 노조의 쟁의에 대응하는 조직의 체제확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다(1990. 3).

### 1. 지침의 목적

일단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기업은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과 교섭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맞서는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고 그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며, 기업이 어떤 원칙을 갖고 현명하게 교섭 대응행위를 하느냐는 문제가 따르게 되는 것이다. 이에 본 지침에서는 바로 위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노사분규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코자 한다.

### 2. 「쟁의대책위원회」 조직과 운영

1. 쟁의대책위원회 조직—쟁의행위의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기업은 즉각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최고 경영자로부터 현장 감독자(반장)까지를 포함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교섭, 쟁의행위 대책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총쟁의대책위원회(이하 총대위라 함)—최고 경영자(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 전체와 현장감독자(반장)까지를 포함한 관리자들을 한데 묶어 총쟁의대책위원회(또는 본부)를 조직하고 비상체제에 들어간다. 이렇게 최고 경영자를 제외하는 것은 쟁의대책위원회의 결정사항이 상대방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최종적으로 대표자가 해결하는 여유를 갖기 위해서이다.

쟁의대책집행위원회(이하 대책집행위라 함)—총쟁의대책위원 중 임원과

부장급 이상으로 쟁의대책집행위원회를 조직하여 쟁의행위에 관한 구체적 협의와 전략을 수립하도록 한다.

쟁의실무대책위원회(이하 실무대위라 함)—과장급 이하 현장감독자(반장)까지를 포함하여 실무대위를 조직하여 대책집행위가 결정하고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현장여론을 수집하고 이에 따라 실제적으로 적절한 대책을 위원회별로 활동하도록 해야 한다.

쟁의대책소위원회—총대위에 포함된 위원들은 다음과 같은 소위원회를 조직하여 참여케 하고 임무를 주어 활동케 한다.

- ① 노동조합 요구조건 분석소위원회
- ② 현장여론조사 및 대응전략소위원회—현장여론에 따른 반대의견 제시, 조합원의 오해사항 등에 관한 설명, 현장여론 안정유도
- ③ 노조의 쟁의전략, 기술분석소위원회—노조의 쟁의전략 전술을 분석하여 기업측면에서 어떻게 대응전략을 구사할 것인가하는 구체적인 전략, 전술을 계획하고 실행
- ④ 법률소위원회—노조의 쟁의행위 또는 노조원들의 쟁의행위 중에 불법적인 행위가 있는가. 있다면 이에 관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적 대응행위 즉 고발조치에 관한 준비를 하고 적정시기에 대응 조치
- ⑤ 홍보소위원회—쟁의 발생시 노조가 주장하는 쟁점에 따른 기업주장 홍보(대외적 홍보, 가족에 대한 설득)
- ⑥ 외부대책소위원회—외부와의 관계(지역사회 행정관청 등)를 맡아서 대책활동
- ⑦ 회사시설물보호소위원회—쟁의행위시 회사의 시설물, 제품 등을 보호하는 임무
- ⑧ 기타 위원회—소위원회 활동과정에서 회사에 대한 애사심을 높이고 쟁의행위를 속히 종결시켜야 하겠다는 사명감을 갖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 2. 쟁의대책위원회 운영

### 1) 운영의 원칙

- 민주적 원칙을 지킨다.
- 현장분위기와 사회여론을 중시한다.
- 명분과 감정보다 기업은 경제적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 노조간부 또는 가장 강력한 주동대표를 만나서 인간적 이해와 설득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람은 목석(木石)이 아니라 생각하는 동물이다. 따라서 이해있는 설득이 무엇보다도 큰 무기이다.
- 회사가 최대한 양보하고 더이상 양보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 단호한 자세를 보여주고 불법적 행위는 물증을 갖고 즉시 고발조치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 3. 교섭체제에 대한 기업대응전략

### 1. 교섭체제의 확립과 강화

노동조합의 요구조건에 관해서 회사 입장에서 합리적 근거와 수락의 범위를 제1안, 제2안, 제3안 등 마련 제시, 노조에서 회사의 대응 전략에 대하여 위협을 느끼도록 한다.

### 2. 교섭위원 또는 교섭상의 전략

- ① 교섭위원은 대회 단체교섭 전에 대책회의를 갖고 의견을 통일하고 그 범위 내에서 교섭을 진행
- ② 교섭의 사회권은 가능하다면 회사측에서 행사
- ③ 노조의 요구조건에 대한 반론을 결정적 시기에 제시하는 것이 최선이며, 회사의 대안에 관해서는 모범답안을 작성하듯 합리적이고 노조가 반론을 제기할 수 없도록 완벽한 대안제시를 하여야 한다
- ④ 교섭회의시 회사측 대표자들은 발언의 내용과 순서를 미리 정하고 회의순서에 따라 정해진 내용을 순번대로 발언
- ⑤ 상대방이 말했거나 제시한 것이 회사측에 유리할 때는 이것을 잡고 동의·실행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정중한 압력을 가하여야 한다
- ⑥ 노조측이 제안했거나 아니면 제시한 말에 대하여 회사측 입장이 정리되지 아니했거나 확신이 없을 때는 애매한 발언을 하거나 단정

적 방법을 피하고 여유를 보여주어야 한다.

- ⑦ 교섭과정에서 노조측인 교섭위원이 회사측에 유리한 발언을 하면 그 발언 내용을 즉시 붙잡아 확인하고 기록하여 기정사실화하여야 한다.
- ⑧ 교섭과정에서 노조측으로부터 새롭고 중요한 제안이 있을 때 또는 회사가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확인한 후 즉각 휴회를 요청하고 회사측이 대책을 세우고 난 뒤 속회하고 노조측 제안에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자유와 민주, 평화와 안정을 갈망하시는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

### 풍산 산재사고의 진상을 고합니다

#### 국민여러분! 사실은 이러합니다.

지난 11월 15일 오후 2시경 경북 경주군 안강읍 산대리에 있는 (주)풍산 안강공장 202제조부 2QC개발공실에서 섬광탄(유도탄)용 I·R·F 섬광제조립 도중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이어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광경이 저희들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온몸이 불타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상황에서도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동료들의 피맺힌 절규를 들어보았습니까?

분노에 떨며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은 어찌합니까?

병원에 긴급 수송된 동지들의 몸은 거인처럼 부풀어 오르고 불타 숯검정이 된 살점에서는 피고름이 흘러 누운 자리 밑에 층층이 고이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까맣게 일그러져 형태도 알아볼 수 없는 전신을 어루만지며 “괜찮다. 조금 있으면 낫는다”며 일래고 쓰다듬고 달래는 어머니, 아버지의 울먹이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쪼그르드는 자신의 몸도 느끼지 못한 채 극도의 호흡곤란으로 인하여 목을 쪼고 목구멍으로 고무호스를 집어넣어 쉼없이 씹으며 식도호흡중인 아가씨의 신음소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차마 눈뜨고는 보지 못할 참혹한 광경이었습니다.

이 몸서리치는 참상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목숨을 담보로 생산량만을 강요, 고집하여 자신의 치부를 가리려는 무능한 경영주의 아집 때문이었습니다. 올 생산목표량 달성에만 눈이 어두워

안전은 완전 무시한 채 작업만을 강요해온 작자들의 비인간적이고 파렴치한 짓이 저희들의 순박한 동료들을 앓아갔습니다.

왜 저들의 잘못으로 인해 저희들의 목숨이 짓밟혀야 합니까?

사고가 난 지 20여 분이 지나도록 비상벨 소리 하나 들리지 않고, 하다못해 회사간부들의 그 혼한 자가용 한 대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규정된 인원(4명)이 일해야 하는 공실에 안전규정을 무시한 채 초과인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더군다나 그 공실에 대한 위험도 및 전문지식조차도 없는 생소한 상태의 다른 부서 종업원 14명을 투입시켜 무리한 작업을 강요한 어이없는 사실 앞에 저희들은 그저 말문이 턱 막히는 한편, 열악한 노동현장에서 죽음의 공포를 가슴에 안고 흑사를 당하면서까지 생명을 부지해 나가야 하는 노동자들이기에 슬픔과 울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 자유와 민주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주)풍산 안강공장은 국가방위산업체라는 간판 아래 정권과 깊이 유착,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 벌어들인 돈으로 당연히 해야 할 기술개발 및 사원 복지 증진은 외면한 채 독재정권에 42억 원이라는 거금을 상납하는 등 무능하고 무사안일한 경영을 한 결과 초래된 회사의 어려움을 마치 종업원들이 근무를 태만한 결과인 양 모든 책임을 조합원에게 전가하면서, 올해 들어와서는 계획성없는 경영의 표본을 보여주듯 연초에는 계획물량이 적다며 1,140명을 감원하겠다고 조합원을 위축시켜, 지역주민 여러분께 파문을 일으키더니 연말이 되자 이번에는 납기달성이 촉박하다며 오히려 용역사원 400명을 채용, 생산현장에 투입했을 뿐만 아니라 터무니없이 작업량을 증가시켜 현장 조합원에게 가혹한 노동통제에 혈안이 되어 전혀 위험공실 근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타부서 조합원을 임의로 대량 지원근무토록 하여 안전법규 위반은 물론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생산량만 강요한 결과 이같은 비참한 사태를 초래하고야 말았습니다.

#### 자유와 민주를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이 다수 근무하고 있으며, 이 지역사회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풍산 안강공장이 진정으로 종업원들이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노사관계가 신뢰 위주의 안정된 상태가 되어



진실한 산업평화가 정착되지 않고는 결코 이 지역사회가 조용할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풍산가족의 이 고통과 괴로움이 남의 일이라 생각마시고 다 함께 관심을 가지고 회사측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경영주의 그간의 부도덕한 노동착취에 분노하는 강한 목소리를 전달하시어 이제라도 풍산 경영주가 인간성을 회복하고, 진실로 참회토록 하여 풍산 안강공장에 또다시 이같은 큰 불상사가 발생하여 이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지 않게끔 다같이 충고하고 시정시켜 나가야겠기에 지역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사고경위 및 상황**

**1. 사고발생**

- 일 시 : 1990년 11월 15일(목) 14시 20분경
- 장 소 : (주)풍산 안강공장 202제조부 개발실(16평)
- 작업인원 : 사고당시 남자 12명, 여자 2명, 총 14명

**2. 사고경위**

• 15일 14시 20분경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작업자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공실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 '퍽'하는 소리와 함께 화재가 발생했으며, 제일 먼저 공실에서 밖으로 뛰어나온 피해자가 5초, 마지막 구조된 작업자는 진화가 끝난 사고발생 15분 경과 후 구조,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3. 사고원인**

- 각 기관에서 현장검증과 시험을 통해 사고원인을 찾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 사고발생시 자동샤워장치가 작동되었지만 공실 내부가 전소되었고, 비상벨이 울리지 않아 주위 공실의 작업자는 사고상황을 모른 채 작업을 했으며, 다행히 연쇄화재는 없었다.

**4. 피해자 상황**

- 공실 작업자 14명 전원이 3도화상 20~90%의 피해를 입었으며, 11월

28일 현재 사망 3명, 위독상태 5명으로 사망자는 더 늘 것으로 추정됨.

**• 피해자 인적사항**

성명	소속	입사일자	생년월일	상태및화상정도	병원 및 호실
손기석	301제조부	1982. 9. 15	1963. 10. 22	중상	부산대학병원 822호
김문명	·	1978. 9. 1	1955. 4. 27	· 식도호흡	· 동산병원 1519호
송용수	·	1980. 1. 21	1960. 8. 8	·	· 영남대학병원 1257호
김익기	·	1982. 9. 15	1964. 2. 27	·	· 경북대학병원 3109호
김덕룡	·	1982. 11. 18	1965. 1. 1	· 식도호흡	· 동산병원 1519호
정병섭	·	1980. 3. 1	1955. 11. 27	·	· 부산고신병원 3921호
임광재	·	1978. 12. 20	1960. 9. 17	·	· 부산대학병원 822호
한준식	101제조부	1986. 10. 31	1964. 10. 28	· 사망	· 영남대학병원
박재영	·	1987. 3. 23	1959. 1. 27	·	· 동산병원 1519호
이희자	자재부	1987. 7. 27	1967. 6. 15	·	· 동산병원 93동 351호
이광우	202제조부	1986. 2. 21	1967. 2. 28	위독 사망	· 경북대학병원 3101호
김만숙	방호실			위독 식도호흡	· 영남대학병원 552호
오상열	무통실업			중상	· 선린병원 605호
박동수	·			·	·

**5. 상황일지**

- 15일 14 : 20 14명 전원 화약화재로 중상자 발생
- 17일 04 : 15 영대병원 송용수 70% 화상, 산소호흡
- 09 : 00 동산병원
- 김문명 부기가 서서히 빠지고 호흡기에 그을음
- 김덕룡 (위험)
- 박재영 식도호흡하고 있음
- 12 : 29 영대병원
- 송용수 상태악화

- 한준식 류영우 부회장 방문  
김만숙
- 22:00 한준식 동지 사망(영대병원)
- 18일 16:00 대구 영대병원 주위(영안실) 형사, 경찰, 닭장차까지 배치  
(시신이동 저지를 위해서 투입된 것 같음)
- 19일 12:00 영대병원 : 수석부지부장, 체육부장, 산안부장, 차장, 유가족과 회사측이 협의에 들어갔으나 결렬
- 12:25 경대병원 : 공장장 등 회사간부가 돈봉투를 건네주자 “사람이 죽어가는데 돈이면 다냐”고 가족들 격렬하게 항의
- 20일 09:30 대의원 전원 병실별로 사고환자 방문
- 20일 16:00 분향소설치 관계로 통제초소에서 전경들과 몸싸움, 설치  
~17:00 못함
- 20:50 영대병원 : 장례식 11월 21일 09시 진행키로 함
- 21일 11:15 부대병원 : 퇴원수속 밟았으나 고신의료원에 병실이 없어서 대기중  
한준식 동지 장례 : 대구시 화장 12호→경주 배반동 중생사 이동
- 22일 18:30 고신의료원 : 병실부족으로 임광재 동지 응급실 대기중
- 23일 15:40 온산지부장 방문(경대병원)
- 22:10 고신병원 : 임광재 동지 아직도 병실이 없어 응급실  
'회사측 시설부장 김현직 전화로 환자가족에게 포스터 제작 못하도록 회유'→가족 회사측 회유 거부
- 24일 17:40 몸에 열이 있음(정병섭, 손기석)
- 25일 21:25 경대병원 : 이광우 악화  
영대병원 : 박재영 위독
- 23:35 경대병원 : 이광우 혼수상태—수석, 조직 대기
- 26일 07:15 경대병원 대구로 3명 상경요망 : 의사 오늘이 고비라고 함
- 10:20 동산병원 : 이희자씨 사망

11:10 동산병원 : 고 이희자씨 영안실 안치

17:12 경대병원 : 이광우씨 사망

27일 11:55 동산병원 : 박재영 동지 체온이 떨어지고 있음

#### 6. 화학약재의 특성

- 일반화재와는 전혀 상황이 다른 순간적 발화와 고열로 짧은 시간 내 큰 피해가 발생한다.
- 자동 진화장치가 완벽하다고 할지라도 진화시까지 대피가 어려우며, 순간적 폭발사고이기 때문에 대피 또한 한계가 있다.

#### 노동조합의 대응방안 및 요구

이번 화재사고의 근본적 원인과 문제점이 회사 경영진의 무리한 경영합리화 계획 실패로 노동자의 정상적 노동조건을 무시하고 무리한 작업량 상승과 생산위주의 경영에서 비롯된 만큼 회사 최고책임자와 경영진은 마땅히 사고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받아야 하며, 근본적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1. 이번 사태를 방관한 노동부장관은 사퇴하라.
  2. 사직당국은 이번 사태를 유발케 한 회장 류찬우, 부회장 류영우, 사장 정훈보, 방산사장 김상현, 안강공장장 오세훈, 안전실장 박정수, 관리부 공장장 김태윤, 생산부 공장장 박태호, 생산관리실장 한황섭, 202 제조부장 박해도를 즉각 구속 수사하라!
  3. 부당한 연장근로와 특근 강요를 중단하라!
  4. 경영과 인사사항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하라!
  5. 피해자 및 사망자의 피해보상에 최선을 다하라!
- 이상의 요구사항이 소용되지 않을시 노동조합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1990년 11월 28일

(주) 풍산노동조합 안강지부

(주) 풍산 안강공장 노동형제 일동

## 성명서

### 민자당의 탁아법 날치기 통과를 규탄한다

12월 18일 민자당은 민간탁아소, 여성단체, 교육계, 반민간단체 등의 거센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다른 법률들과 함께 「영·유아의 보호, 교육에 관한 법률안」을 한 편의 시나리오처럼 완전히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에 우리 민중당 여성위원회는 이번 사태가 3당야합의 산물로 민자당이 탄생한 이후 방송악법, 국군조직법 등의 날치기통과에 이어 계속되는 거대여당의 횡포요, 국민의 요구와 의사를 완전히 무시한 폭거라 규정한다.

이번에 날치기 통과된 민자당의 「영·유아의 보호, 교육에 관한 법률안」은

**1. 저소득 주민지역 아동들을 자발적이고 현신적으로 보살펴오던 민간 비영리 탁아소의 지원, 육성은커녕 오히려 엄격한 규제와 통제로 그 존립마저 위협하고 있다.**

그동안 부모들이 일터로 나간 뒤 방안에 갇혀 지내거나 위험 속에 방치되어 온 우리의 아이들을 국가가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을 위해 그 책임을 지고 있었던 주체가 누구였던가? 바로 지역탁아소연합회 중심의 비영리 민간탁아소 등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이번 민자당안은 이러한 탁아소를 지원, 육성하기보다는 비현실적인 기준을 설정해 놓고 보고와 감시를 통해 인가·허가취소·규정을 따르지 않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조항을 강화하여 기존 탁아소들의 존립을 위협하면서 정부의 획일적인 통제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2. 탁아사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민자당의 법안은 탁아 지원대상을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자, 보사부령이 정한 자로 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해당 대상이 극소수일 뿐 아니라 무의탁노

인, 소년·소녀가장인 가정 등이라 실제적으로 탁아의 필요성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이들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란 결국 공문구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그외의 사람들에게는 영·유아의 보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국가의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을 수혜자부담원칙으로 전가한 반(反)사회복지법인 것이다.

엄청난 국방비, 재벌들의 재정적 특혜 등에 대해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온갖 생색을 다 내면서 정작 국민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문제요,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는 탁아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돈을 쓰지 않겠다는 것은 현재의 정부여당이 누구를 위한 권력인가하는 점에서 철저히 반민중적임을 스스로 노골화시킨 것에 다름아니다.

**3. 민자당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과정은 철저히 비민주적이었으며, 거대여당의 폭력성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었다.**

각계각층의 다양한 반대의사와 현재 탁아사업의 주체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전히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법안을 날치기 처리한 것은 모든 일을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거대여당의 비민주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었다.

따라서, 우리 민중당 여성위원회에서는 이번 민자당의 횡포를 여성들의 일할 권리와 아이들의 보호받을 권리를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노동자, 농민, 도시서민과 함께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하며, 올바른 탁아법은 다음의 사항이 충분히 고려되어 다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공공탁아소의 설립과 함께 현재의 민간탁아소를 양적, 질적으로 확산 시키며, 이를 위해 민간탁아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과 지역별, 직장별 탁아소의 설치를 의무화시켜야 한다.

둘째, 올바른 탁아입법은 이에 대해 끊임없이 의견개진을 해온 민간탁아소와 여성단체들의 의견이 적극 수렴되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위의 원칙이 지켜지는 올바른 탁아법 쟁취를 위해 계속 연대,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1990년 12월 19일

민중당 여성위원회

## 부록 3

## ‘억장’

(『노동인권소식』 중에서)

## 회장의 분풀이

“회장님 제발 좀 나가주세요. 저희가 언제 붙잡았어요.”

1989년 12월 5일, 크라운전자노동조합 농성장에서는 웃지 못할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었다. 남성, 남성전기, 남지전자, 크라운전자 등 4개 계열사를 소유하고 있는 윤봉수 회장이 재산이 맞지 않는다 하여 크라운전자 노동자 293명 전원을 해고한 지 1주일, 윤봉수 회장은 이날로 예정되었던 단체교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회장면담으로 대체한다는 통보를 보내왔다.

농성장에 나타난 윤봉수 회장은 한 술 더 떠 관리자들을 입회시키지 않으면 면담조차 않겠다고 고압적인 자세를 취했다.

시종일관 그런 식으로 면담을 끝낸 윤봉수 회장은 사장실 소파에 앉아 궁리를 하다가 남부서로 전화를 걸었다.

“지금 농성장에 불법 감금당해 있으니 당장 공권력을 투입해 달라”는 것이었다.

실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다. 조합간부들은 제발 나가달라고 사정하는 한편, 신문사와 경찰서로 전화를 걸어 회장의 자작극을 폭로해야만 했다.

사기극을 벌이려다 실패한 윤봉수 회장은 자정이 넘어서야 농성장을 떠났는데 회장이 정문을 나서는 순간 수사대가 들이닥치기 시작했다. 농성하던 조합원들은 즉시 정문을 방어했다. 그런데 당시 앞장섰던 황남진씨가 수사대에게 붙잡혔다. 여기서 윤봉수 회장은 기어코 분풀이를 하고야 말았다. 마침 두 팔을 꺾인 채 꼼짝 못하고 있던 황남진씨의 좌우 뺨을 번갈아 갈기기가 했다

니 황남진씨의 머리카락을 돌돌 말아쥐고 한 움큼을 뽑아버렸던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악담을 퍼부었다.

“너 이 새끼, 평생 후회할 것이다. 너 분명히 잘라 버린다.” 윤봉수 회장이 혼자서 연출하려 했던 ‘회장감금사건’은 이렇게 회장 자신의 치졸한 폭행사건으로 끝나고 말았다.

그 후 12월 17일, 집단해고 철회와 일터보장을 요구하던 크라운전자 조합원들은 백골단의 투입으로 경찰에 연행되었다.

이 중 신정숙 위원장을 비롯한 3명의 조합간부와 조합원 황남진씨, 모두 4명이 구속되었다. 그런데 평조합원 중 유일하게 구속된 황남진씨의 구속 이유가 좀 묘연하다. 모델스러운 폭행과 폭언에도 굴하지 않고 뺨힌 머리카락을 증거로 윤봉수 회장을 고소했던 황남진씨가 오히려 회장폭행 혐의로 구속된 것이다.

법이 가진 자의 편이라고는 하지만 이토록 어처구니없는 경우를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황남진씨. 법정에서 형평을 잃어버린 법집행을 비판하는 그는 어떤 말로도 가슴에 맺힌 사연을 담아내기에 충분치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 그러나 평범한 노동자였던 그가 자본자와 법의 본래 모습에 눈뜨게 되고, 조합원들의 신뢰를 한 몸에 받는 당당한 투사로 변모하게 된 것은 윤봉수 회장이 기대하는 평생의 후회가 아니라 평생의 보배가 아닐지.

크라운전자 조합원들은 3월 말 현재 4개월이 넘는 집단해고 철회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윤봉수 회장은 1990년 들어서 다시 남지전자를 폐업한다면서 남지조합원 전원을 해고하고 남성전기 김경옥 위원장을 해고시키는 등 계열사 전체에 걸쳐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 임금을 깎자고?

‘-13.7%’

노조측 교섭위원들은 잘못 본 게 아닐까 하여 두 눈을 크게 떴다. 틀림없는 마이너스 인상안, 즉 임금을 깎자는 얘기였다. 교섭장은 즉각 노조측 위원들

의 분노에 찬 목소리로 뒤덮였다.

“지금 교섭을 우롱하자는 애깁니까?”

“노동자들은 먹지도 말고 쉬지도 말라는 것입니까?”

항의하는 소리에 회사측은 더욱더 놀라운 안을 제시했다. 현재 임금으로는 월 350시간(주 87시간) 일하면 노조측이 주장하는 최저생계비의 85% 수준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주 87시간이라니. 그것은 노예라도 불가능한 일이었다.

회사측이 작성한 ‘90년도 임금 인상안’에 나와 있는 온갖 도표와 어지러운 계산은 노동자를 노예로 만들기 위해 짜낸 공리였다.

교섭은 당연히 결렬되었다. 이렇듯 어처구니없는 마이너스 인상안을 들고 나온 회사는 구로공단에서도 장사 잘되기로 소문난 (주) 천지산업이었다.

이 소문은 곧 구로지역 노동자들에게 전해졌고 누구나 한번씩 울분을 터뜨리게 만들었다.

자본가들이 임금동결이니 7% 인상이니 하면서 다분히 폭력적인 임금인상안을 내놓을 때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고 다짐은 했지만, 임금을 깎자고 나올 줄이야……

이것뿐이 아니었다. (주)천지산업의 관리자들과 임금이 교섭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회사 정문 앞에 두 줄로 늘어선 출근하는 조합원들에게 유인물을 나눠주었고 가슴에는 일제히 파란색 리본을 달았다.

“피땀흘려 이룬직장 내손으로 지켜내자.”

이 말은 결국 “임금을 인하해서 노동자 피땀으로 이룬 직장을 독차지하고 싶다”는 자본가의 심정을 표어로 만든 것이었다.

현재 (주)천지산업의 임금교섭은 11차에 이르기까지 -10.56%를 거쳐 0%에 머무르고 있다. 이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생각나는 말이 있다.

누가 보더라도 인륜에 어긋나고 양식을 벗어나 분노할 만한 일을 가리켜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한다. 최근의 물가상승, 특히 전세값 상승에 비교해 볼 때 마이너스 인상안 같은 것을 그렇게 부를 수 있지 않을까.

## 6공화국과 수은중독

“세상에 믿어지지 않아요!”

이 말이 무슨 소리인가 하면 구로 3공단에 위치한 오리엔트전자에서 근무하다가 수은중독으로 판명되어 입원하게 된 한 여성조합원의 말이다.

오리엔트전자는 유한회사로서 대략 20년 전에 100% 미국인 자본으로 설립되어 전화교환기 등에 들어가는 수은 스위치를 생산해 왔다.

놀랍게도 이 회사는 20년간 꾸준히 성장해 오고, 사장도 바뀌는 변천을 겪었지만 단 한번도 작업환경측정을 한 적이 없었다.

게다가 “노동자도 인간이다. 수은은 못먹는다”며 파업농성을 하는 조합원들에게 “수은은 먹어도 안 죽는다. 맥주와 돼지고기를 많이 먹으면 다 씻겨 내려가니 염려할 것 없다”고 우기다가 폭력을 휘둘러 입원하게 하는 회사였다.

그간 오리엔트 회사측은 걸핏하면 노동자를 폭행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안해 본 것이 없고 최근 노조 전임간부에 대한 임금지급 거부, 교섭위원회에 대한 해고 협박 등으로 노동조합을 탄압해 왔다.

그러다가 수은중독자가 발생하자 “수은중독은 직업병이 아니다”는 등 상식 밖의 억지를 부리면서 사태를 조속히 수습할 생각은커녕,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업무방해로 고소해 버렸다.

모든 합법적 절차를 거친 파업 첫날, 담당형사가 와서 남부서장의 지시를 전달했는데 “철야농성은 안된다. 공권력이 투입될지도 모른다”는 위협으로 조합원들을 겁주려고 했다.

노조간부들이 파업의 정당성을 들어 강력히 항의하자 그는 어물어물 “모르겠다. 정부방침이 그렇다”는 말밖에 할 줄을 몰랐다.

또 위원장에 대한 고소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출석요구서를 가져왔기에 쟁의조정법 제9조를 들어 쟁의기간중에는 쟁의 당사자에 대한 구인·구속도 제한되어 있는 터에 경찰서로 출두해 진술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자, “우린 그런 것 상관 않는다. 구속될 각오는 되어 있느냐”고 했다 한다.

무서운 직업병에 걸려 하루 빨리 특수검진과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

구속협박을 하는 것도 그렇고, 법을 상관치 않고 구속을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다는 경찰의 발상 또한 6공화국 민자당식이었다.

이렇듯 회사와 경찰이 보여준 태도는 오리엔트전자의 살인적인 작업환경과 비교해도 손색없을 정도로 열악했다.

파업 한 달이 넘는 지금, 수은중독으로 판명된 11명을 포함한 수은 작업자들에 대한 특수검진이 실시되지 않고 있다. 작업환경측정과 개선도 하루가 시급한데 회사측은 일부 비조합원들을 작업에 투입시켜 집단수은중독으로 유명해진 오리엔트전자는 지금도 계속 돌아가고 있다.

### 언제까지 노동자는 산업폐기물인가

“원진레이온 노동자 10명이 또다시 병원으로부터 이황화탄소중독 판정”

이황화탄소는 2차대전 때 유태인 학살에 쓰여졌다는 신경독성 물질이다. 중독증세는 두통, 불면증, 말더듬으로 시작되어 심하면 언어장애, 수족마비 등 중추신경마비 현상에 이르게 되고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무서운 유해물질인 것이다.

(주)원진레이온에서는 바로 이 이황화탄소중독으로 사망한 사람이 11명까지 확인되었다.

1988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직업병 판정을 받은 사람이 무려 55명.

직업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긴 설명이 필요없는 이 무서운 사례가 ‘선진조국’, ‘복지사회’를 부르짖는 이 나라에 엄존하고 있다. 그것도 해마다 중독 환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외국에서는 이런 산업이 완전밀폐, 자동화된 지 오래고 이황화탄소중독은 이미 과거에 사라진 직업병으로 보고되어 있다.

그런데 (주)원진레이온은 1960년대 일본에서 유해산업, 사양산업을 수출할 때 낡은 기계를 도입해 들여와 배기장치, 방독마스크도 없이 25년간 건강한 노동자를 산업폐기물로 내몰면서 레이온 섬유를 생산해 왔다.

최근 원진레이온의 직업병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게 되자 회사측은 근본

적인 대책은커녕 검진대상을 방사과로 제한하고 직업병 공청회를 열었던 노동자 4명을 해고하는 등 믿기 어려운 작태를 보이고 있다.

노동부의 태도도 한 치 다르지 않다.

오히려 1988년에는 (주)원진레이온에 250만 시간 무재해 기록증을 주었을 정도이고 지금도 수수방관하고 있다.

우리는 내년에도 이 간접적 살상행위로 인한 직업병 환자가 추가되었다는 뉴스를 들어야만 할 것인가?

원진레이온의 노동자는 쓰러진 동료의 작업을 계속하면서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루의 생계비를 벌어야 하는가?

경기도 남양주군 도농, 15만 평 대지 위에 세워진 국내 레이온 생산 독점업체인 (주)원진레이온은 노동자의 죽음을 부르며 오늘도 돌아가고 있다.

### ‘그래도, 설마!’

“출근투쟁 명목으로 노래와 구호를 제창하는 집단행위를 연일 자행…… 작업거부에 다른 업무상 지장을 최소화 하고자 한 회사의 대응조치로서의 잔업희망자와 거부자의 분리 및 각 생산라인 재편성, 이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근로자들의 공정간 이동배치 등을 거부하면서…… 이는 노조측의 원만한 노사관계를 전면 부인한 처사로서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조합활동을 벗어난 행위로 인정된다.”

마치 사용자단체쯤에서 노조에 협박용으로 보냈음직한 이 글은 서울 구로동 ‘일신통신’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지방노동위원회의 1990년 18일자 결정문의 일부이다.

일방적인 힘의 열세에 있는 노동자들과 조합이 사용자에게 당한 탄압을 법적으로나마 구제하기 위해서 생겼다는 노동위원회. 그러나 항상 이곳에서 내린 결정은 사용자측의 입장에 서서 노동조합의 행위는 항상 불순하고 경망스러운 것으로, 그리고 사용자는 정당방위를 한 것으로 일관되어 있기에 노동자의 눈 밖에 난 것은 이미 오래 전의 일이다. 그러나 그동안 사용자의 노골

적인 부당노동행위의 늪에서 허덕여왔던 일신통신노조가 청구한 이번 사건에 대한 결정은 “그래도, 설마!”를 뒤엎을 만큼 편파성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1년이 넘도록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버텨온 회사, 올 임금인상시기에 남자 관리자들이 조합사무실에 들어와 집기를 부수고 난동을 부리기만도 다섯 차례. 이것도 부족하여 회사는 노조와 상관없이 일방적인 임금인상을 결정하였고, 이에 회사측의 최소한의 성실성을 촉구하기 위해 노조측이 잔업 거부를 결의하자, “좋다. 잔업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잔업 안하도록 해주겠다”며 2교대 작업근무를 신설하여 잔업거부에 참여했던 노동자들만을 따로 묶어 강제배치한 것이다. 노동자들이 이를 부당하다며 거부하고 정상 출근하려 하자 출근조차 못하게 막아 현재 노조간부 등은 석 달째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외롭게 싸우고 있다.

지난 해 4월, 노조를 만든 이래로 워낙 회사측의 탄압이 심해 정상적인 노조활동 한 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부당노동행위, 폭력 등으로 회사측을 30여 차례나 고소·고발해야 했던 상황에서 노조집행부를 아예 회사 문밖으로 쫓아낸 사건이 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면 도대체 그 법은 어디에 쓸려고 만들었던 말인가! 법과 제도라는 탈을 쓰고 있지만 법조문의 기본취지조차 무시하면서 사용자의 각종 불법적인 행위를 보호하고 편드는 것을 자신의 업으로 삼고 있는 곳이 바로 지방노동위원회인 것이다.

### 한 검사의 설교

“너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용당하고 있어. 굳이 너네가 있는 곳을 지칭하지는 않겠지만, 너희는 그런 뒷세력에게 역이용당하고 있는 거야.”

9월 14일, 남부지청 안창호 검사실. 집단폭행사건을 고소한 크라운전자조합원들을 몇 시간씩 부동자세로 세워놓은 채 검사는 고소사실을 조사하는 것은 뒷전으로 미루고 소위 이념교육을 열심히 시키고 있었다. 게다가 본 적도 없는 『봄우뢰』라는 북한소설책을 필두로 몇 가지 이념서적을 내보이면서 “그 사람들은 이념적으로 이런 책을 지향하는 사람들이란 말야.”

이런 책을 지향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얘기였다. 심지어 김정아씨가 말 중에 “가열차게 싸웠다”고 하자 그는 발끈하며 가열차게는 한글사전에 없는 북한말이라며 “몰들었다. 큰일이다”라고 호들갑까지 떨었다.

그들은 검사의 이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기가 찼다. 그동안 당한 폭행수가 한두 번이 아니요, 이제까지 각기 다른 폭행사건으로 고소한 것도 3번 이상이었지만 한 번도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그렇기에 이번 조사에 거는 기대는 컸으며, 사실 조금 흥분하기까지 했다. 혹시나 자신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지 않을까해서였다. 그러나 그것은 명백한 착각이었음이 드러났다.

검사는 이념교육에 이어 이제는 종교까지 들먹이기 시작했다. 오히려 그날의 노조원들의 행동은 업무방해나 집시법위반 등에 해당한다는 은근한 협박과 함께.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짓말하면 못써!”라고 김정아씨에게 훈계도 했고, 집단해고를 당해 300여 일째 돈 한 푼 못받고 싸우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인용하여 “자기에게 고통을 준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점잖게 타이르기까지 했다. 검사 앞이란 분위기에 기가 질려 말 한마디 변변하게 답하지 못했던 크라운노조원들이 참다 못해 한마디하려 하면, “나는 이 땅의 근로자한테 할 말이 많은 사람이야. 지금은 내가 말해야 할 시간이다”라고 말을 끊었다.

고소인으로서 진술하러 간 것인지, 죄를 지어서 훈계를 받는 것인지 마냥 헛갈리는 상황에서 크라운노조원들은 여러 감정에 사로잡혔다. 혹시 업무방해나 집시법 위반을 역으로 적용하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불안감도 있었고, 자신들을 칠없는 어린 양 취급을 하던 검사의 말투에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가장 깊은 감정은 갈수록 노골화되는 공권력의 추태를 보고난 뒤 오는 쓸쓸함이었다.

### 때 맞춘 지원사격

추석 연휴를 눈앞에 두고 아남정밀(주) 노동조합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의 노조간부가 해고되었으며, 조직부장 등 4명의 간부는 1개월 정직처분을 당했다.

그동안 갖가지 탄압에도 불구하고 차돌같이 뭉쳐 민주노조를 지켜오던 아남정밀노동조합도 이제 두터운 장벽에 부딪치게 되었다. 회사측의 탄압만이 아니라 해고 및 징계를 당한 다음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발생신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내자 지노위측도 다음과 같은 공문을 보낸 것이다.

……노조의 쟁의목적이 전임자 인정에 관한 건과 노조원 8명 징계조치 철회등 2건으로 볼 수 있는바……이는 쟁의로 해결하기보다는 평화적인 노사협의회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쟁의발생신고인 ‘여혜경’은 1990년 9월 27일 해고된 자이므로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할 수 없음을 첩언합니다. 끝

결국 이 공문의 밑바탕에는 인사권도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니 침해할 수 없다는 것과 해고자는 더이상 조합원도 아니고 조합대표도 될 수 없다는 귀에 익은 논리가 깔려 있었다. 더구나 말이 안되는 것은 ‘평화적 노사협의’를 통해 해결하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주문이다.

‘범죄와의 전쟁’ 운운하며 노동운동과 민중운동에 대한 탄압을 가하고 있는 최근의 정세에 힘입어 회사측은 본격적인 노조와해작업에 나섰고, 노동부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도 신속하고도 적절(?)한 지원사격을 가해 오는 것이다.

엮힌 데 덮친 격으로 이 시점에서 행정관청으로부터 또하나의 공문이 날아왔다. 아남정밀노조가 현재 조직대상으로 포괄하고 있는 뉴코리아(아남 계열사로 아남정밀과 같은 공장, 같은 관리체계하에 있으며 생산라인도 구별되지 않는 법인만 다른 회사)와 조직분리를 하라는 명령의 공문이었다.

회사측은 올 3월부터 노사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전임자 임금을 지급

하지 않았다. 또한 조합원들을 회유, 협박하여 거의 반수 이상을 탈퇴시켰으며 노조사무실에 도청장치를 하는 등 지속적인 탄압을 일삼아왔다.

이런 마당에 행정관청과 노동부에서 전폭적인 지원사격을 가해주니 노조와해를 꿈꾸지 않는 기업주가 있겠는가하는 생각이 든다.

### 노동자의 인권은 아직도……

1990년 12월 17일 오전 7시 45분, 연시훈씨는 출근을 하기 위해 (주)성화 정문 앞에 섰다. 그의 손에는 전날인 일요일에 내용증명으로 보내진 해고통지서가 쥐어져 있었다.

활동이 별로 없던 노조에 나름대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교육선전부장이라는 증책을 맡아 뛰었던 지난 1년 간이 묘한 감회로 긴장감과 함께 얽혀 어른거렸다.

정문 앞에는 30~40명의 체격 좋은 관리자들이 으스스한 분위기를 연출해 가며 연시훈씨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이 분위기에 압도되어 조금 떨리기도 했다.

그러나 30대 1이라는 숫적 열세를 어떻게 뚫어낼건가하는 까마득함은 놀랍게도 많이 물려와 준 동료조합원들이 자기 몸을 돌보지도 않고 관리자들의 철통수비를 뚫어주어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 동료조합원에 둘러싸여 그도 이제까지의 활동의 벅찬 보람을 가슴 몽글하게 느끼며 이제는 삶의 고향과도 같은 조합사무실로 들어갈 수 있었다.

집안형편이 너무 어려워 다니던 대학을 1년 만에 그만두고 건강한 노동자로 살겠다는 마음으로 신발 만드는 회사인 성화에 입사했다. 사회통념상 흑시 대학 1년을 다닌 탓에 취직마저 안될까 싶어 이력서에 기재는 못했다. 다만 취직 후 과장에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고, 별 문제가 없어 이력서 기재사항은 새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일이 문제가 되어 해고를 당했던 것이다.

이런 저런 생각 속에서 동료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9시 10분경 밖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그러곤 모든 것이 전광석화 같이 진전되었다.

4~5명 밖에 없던 노조사무실에 30~40명의 떡대 좋은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 들어와 그를 번쩍 들러메고 나간 것이다. 백주에 벌어진 납치극이었다. 같이 있던 간부들의 몸싸움과 항의도 그의 몸부림도 전혀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다.

분노한 조합측이 대표이사에게 '신병이상 유무 및 현 소재지 확인 요구' 공문을 보내자 회사측은 역시 공문으로 "연시훈은 조합원이 아니기에 사외에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 나갔다"하고 답변했다. 회사측 표현대로 하자면 '허심탄회한 납치극'이었던 것이다. 이 납치극은 남한강까지 끌고갔다가 한 건 올렸다는 만족감에 실컷 먹고 고스톱을 치는 납치범들 몰래 연시훈 씨가 도망침으로써 끝났다.

이 납치극은 회사의 의도와는 달리 짧게 끝났지만 조합원들 사이에는 분노의 파장이 일고 있다. 경과보고대회에 참여한 조합원의 참석율이 90% 이상이었고 노조원도 이를 노조탄압으로 규정하고 열심히 대응하고 있다. 연시훈 씨에게도 더 굳건히 싸우겠다는 결심을 굳히는 계기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 노동인권보고서

■ 찍은날 1991년 6월 15일

■ 펴낸날 1991년 6월 30일

■ 위은이 노동인권회관

■ 펴낸이 장두환

■ 펴낸곳 역사비평사

■ 등록번호 제1-669호(1988. 2.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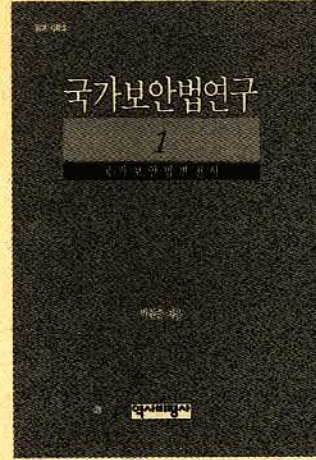
서울 중구 필동2가 120-1

전화 279-0157(영업), 279-0158(편집)

팩스 279-0158

■ **값 5,400원**

\*잘못된 책은 구입하신 서점에서 바꾸어 드립니다.



# 국가보안법연구1 국가보안법 변천사

박원순 지음 / 3,800원

이 책은 국가보안법의 모든 것을 해부한 본격 연구서로서 국가보안법의 내용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남용과 악용의 실상을 모조리 파헤치고 있다. 또한 법과 사회와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법의 제·개정 및 그 적용의 역사적 정치사회적 배경을 분석하고, 다시 이 법의 남적용과 냉전이데올로기의 확산이 거꾸로 정치·문화의 제반조건을 어떻게 왜곡하여 왔는가를 심층적으로 논증하고 있다.

이 책은 민주와 통일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인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자 하는 굳은 신념과 투철한 역사의식의 산물입니다. 우리는 이 책을 국가보안법의 칼날에 희생된 모든 민주동지들에게 바칩니다.

# 생각하는 갈대

## 사회주의를 위하여 더 많은 민주주의를 1917년에서 현재까지

이 책을 읽고 있노라면 독재권력은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얼굴을 하고 나타난다는 평범한 상식이 세삼스럽게 상기된다.

독재권력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크나큰 공통분모를 가진다.

1960, 70년대의 유신독재와 그후 1980년대의 군사독재에 저항했던 경험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니 현재도 형식적 민주화의 장막 뒤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권력의 횡포·비리에 맞서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인민의 대변자가 되어 “사회주의를 위하여 더 많은 민주주의”를 외치는 소련 인텔리겐치아의 목소리가 자신의 목소리가 아닌가 하는 착각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 역자서문 중에서 —

모리스 키갈리츠키 지음 / 인양노 옮김

## 노동인권회관 안내

노동인권회관은 1987년 7, 8월 노동자대투쟁 이후 새롭게 펼쳐지고 있는 민주노조운동의 발전과 노동해방의 힘찬 대열에 함께 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고통받는 노동자들과 여성들의 인권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싸워온 권인숙씨가 국가로부터 받은 배상금을 기초로 하여 뜻있는 동료들과 함께 시작하였다.

노동인권회관은 1989년 10월 28일 개소한 이후 노동운동의 종합적인 지원기관을 목표로 하여,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일반상담(전화, 면접상담)과 지원, 노동법률상담, 노동운동의 전망을 밝혀 나가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형식의 교육설치 그리고 조사연구사업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해 왔다.

### 주요활동

#### 1. 상담활동

- ▲ 개별노동상담: 체불임금, 미지급수당, 퇴직금, 부당해고, 산업재해, 직업병 등 각종 개인적 권리구제에 대한 상담
- ▲ 노동조합상담: 부당노동행위, 위장폐업, 단체협약 기타 조건의 일상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문제
- ▲ 노동법률상담: 노동관계법의 해석, 적용을 둘러싼 각종 분쟁에 대한 상담 및 소송지원활동

#### 2. 교육활동

- ▲ 노동조합교육: 노동조합 간부 및 일반조합원을 상대로 한 노동관계법 해설 단체교섭 임금인상 등 노조활동에 필요한 제반 교육
- ▲ 교양교육: 역사교실, 경제교실, 철학교실, 노동운동론 등 교양교실 운영

#### 3. 조사연구 및 자료발간

- ▲ 노동조합활동에 필요한 각종 조사활동 및 연구활동
- ▲ 노동인권소식 발간: 격월로 회관사업과 관련된 상담내용과 주요 노동사건 해설
- ▲ 노동인권보고서 발간: 임금수준, 노동시간, 산업재해 등 근로조건 실태와 공권력 및 사용자에 의한 각종 노동인권 침해사태를 폭로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매년 1회 노동인권보고서 발간
- ▲ 노동관계 자료집 및 책 발간

### 이사회

김찬국 (교수, 이사장)	권처홍 (권용목씨 부친)
김금수 (노동교육협회장)	김동완 (목사)
박원순 (변호사)	양길승 (의사)
양요순 (수녀)	양요환 (의사)
이미경 (여성단체연합부회장)	이삼열 (교수)
이소선 (전태일열사 모친)	조희순 (목사)
홍성우 (변호사)	황인철 (변호사)

### 소장

박석운

### 대표간사

권인숙